

수탁연구 07-42

'06년 ITU전권회의 정책적 함의와 전략적인 국제기구 활동 강화방안

김철완/김태은/안상은

2007. 12

서 언

세계 최고, 최대의 정보통신 전문 국제기구인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는 4년마다 전권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를 개최하여, 향후 4년간의 ITU의 전략과 정책, 예산 등 중요 사안을 결정하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출직과 이사국을 선출합니다. 2006년 터키 안탈라에서 개최된 ITU 전권회의는 지난 8년간 ITU를 운영하였던 우즈미 사무총장체제에 이어 뚜레(I. Toure) 사무총장을 비롯한 새로운 운영진을 선출하였으며, 향후 4년 간 ITU 활동의 기반이 될 전략계획 및 재정계획을 포함한 다수의 결의와 권고를 채택하였습니다.

WSIS(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의 성공적 개최와 융합의 급속한 진전과 같은 ICT 환경의 변화 등은 ITU에게 새로운 임무와 역할을 부과하고,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여 ITU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4년 간의 ITU의 활동은 ITU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기회에 대한 대응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선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그 책임도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화 시대 국제협력의 장인 국제기구에서 규범 정립을 주도하며,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를 강화가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ITU 전권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정 등의 내용과 그 이행에 따른 함의를 면밀히 파악하고, 제기된 이슈에 대응하여 각 방면의 전문적 식견을 모으고 심도 있게 연구하여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정책 방안을 가늠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ITU 차원에서는 전체 기구의 구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는 이사국으로서 좀더 효율적이고 전체 회원국의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최대의 IT 국제협력기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T 강국으로 또한 이사국으로서 ITU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ITU

를 통해 국제 IT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ITU에 대한 참여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문별 활동 주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IT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가 한층 제고되고 있습니다. ITU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태 지역 정보통신 협력체인 APT에 대한 연구 및 참여전략을 ITU와 연계함으로써 국제기구활동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ITU 및 관련 국제기구 활동과 관련한 주요 현안 발생시 발생 시 대응 전략의 기본 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각종 국제기구에서의 우리나라의 활동과 의제 성립을 주도하기 위한 정책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4년간의 ITU 활동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T 강국 한국의 세계시장에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주도의 기초자료 역할을 하여 세계 IT 발전 및 표준화 과정의 국제규범 정립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부차적으로는 우리 IT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고서의 완성을 위하여 지난 1년 간 본원의 김철완 박사, 김태은 책임연구원, 안상은 연구원 등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지면을 빌어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또한 ITU-T부문과 -D부문 의제분석에 각각 도움을 주신 TTA의 박중봉 팀장과 KADO의 조정문 팀장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본 연구가 ITU 활동 및 국제협력에 따른 주요 의제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연구자와 정책입안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07년 12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 장 석 호 익

목 차

| | |
|--|----|
| 서 언 | 1 |
| 요약문 | 7 |
| 제1장 서 론 | 17 |
| 제 1 절 ITU 개관 | 17 |
| 1. ITU의 목적 및 활동 | 17 |
| 2. ITU의 구성 | 19 |
|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22 |
| 제 2 장 2006년도 ITU 전권회의(PP-06)의 주요 결과 및 합의 | 24 |
| 제 1 절 ITU 전권회의 개관 | 24 |
| 1. 창립~니스 전권회의 | 26 |
| 2. 추가전권회의 | 27 |
| 3. 교토 전권회의 | 28 |
| 4.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 | 29 |
| 5. 마라케쉬 전권회의 | 30 |
| 제 2 절 2006년도 ITU 전권회의 주요 논의 | 31 |
| 1. 2006년도 전권회의 주요 결정 및 결의 | 33 |
| 2. 2006년도 안탈라 전권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 37 |
| 3. 선 거 | 51 |
| 제 3 절 2006년도 전권회의의 성과와 정책적 합의 | 56 |
| 1. 2006년도 전권회의의 주요 성과 | 56 |
| 2. 우리나라의 주요 활동 및 성과 | 60 |

| | |
|--|-----|
| 제 3 장 2007년 ITU 이사회 주요 논의 | 63 |
| 제 1 절 ITU 이사회 개관 | 63 |
| 제 2 절 주요 의제별 논의 | 66 |
| 1. 예산 및 재정(MBG) | 66 |
| 2. 조 직 | 71 |
| 3. 인 사 | 73 |
| 4. 텔레콤(ITU Telecom) 행사 | 74 |
| 5. WTPF 및 기타 | 76 |
| 제 3 절 2007년도 ITU 이사회의 성과와 정책적 합의 | 78 |
| 1. 2007년도 ITU 이사회의 주요 성과 | 78 |
| 2. 우리나라의 주요 활동 및 성과 | 79 |
| 제 4 장 2007년도 APT 주요 논의 | 81 |
| 제 1 절 APT 개관 | 81 |
| 제 2 절 운영진 선거 | 84 |
| 제 3 절 제31차 APT 관리위원회 주요 논의 | 85 |
| 1. 사업계획작업반(Ad hoc Group on Work Program) | 85 |
| 2. 예산작업반(Ad hoc Group on Budget) | 90 |
| 제 4 절 제31차 APT 관리위원회의 성과와 정책적 합의 | 93 |
| 1. 제31차 APT 관리위원회의 성과 | 93 |
| 2. 우리나라의 주요 활동 및 성과 | 94 |
| 제 5 장 평가 및 전망 | 97 |
| 참고문헌 | 100 |
| 부 록 | 101 |

표 목 차

| | |
|--------------------------------------|----|
| 〈표 2-1〉 ITU 전권회의 및 주요 회의 일람 | 25 |
| 〈표 2-2〉 PP-06 삭제 결의 | 34 |
| 〈표 2-3〉 PP-06 폐지 결의 | 35 |
| 〈표 2-4〉 PP-06 신규 결의 | 36 |
| 〈표 2-5〉 PP-06 ITU 사무총장 선거 결과 | 52 |
| 〈표 2-6〉 PP-06 ITU 사무차장 선거 결과 | 52 |
| 〈표 2-7〉 PP-06 ITU BR국장 선거 결과 | 53 |
| 〈표 2-8〉 PP-06 ITU RRB 위원 선거 결과 | 53 |
| 〈표 2-9〉 PP-06 ITU 이사국 선거 결과 | 54 |
| 〈표 2-10〉 2007~2010 ITU 이사국 | 56 |
| 〈표 3-1〉 ITU 이사국(2007~2010) | 64 |
| 〈표 3-2〉 2007 이사회 참석 우리나라 대표단 | 64 |
| 〈표 3-3〉 2007 이사회 의장단 | 65 |
| 〈표 3-4〉 2007 이사회 일정 | 65 |
| 〈표 4-1〉 제31차 APT 관리위원회 일정 | 84 |
| 〈표 4-2〉 APT 사무차장 선거 결과 | 85 |
| 〈표 4-3〉 2008 APT 사업계획안 검토 결과 | 86 |
| 〈표 4-4〉 2008 APT 예산 | 91 |
| 〈표 4-5〉 APT 회원국 특별 분담 내역 | 92 |

그림 목차

| | |
|---------------------------------|----|
| [그림 1-1] ITU 조직도 | 20 |
| [그림 1-2] ITU 사무국 조직도 | 22 |
| [그림 2-1] ITU 기여금 단위 증가 흐름 | 58 |
| [그림 4-1] APT 조직도 | 83 |

요 약 문

제1 장 서 론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이하 ITU)은 현존 국제기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기구 중 하나로, 정보통신 분야 전반을 다루는 최대 국제기구이다. ITU는 세계 경제와 정보사회의 도래가 머지 않은 지금,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 모든 인류가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 달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전 세계의 공존공영을 이루기 위해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라는 전제 하에 ITU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 재정, 인적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2007년 12월 현재, ITU에는 191개국이 회원국(Member State)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사업자·연구기관·국제기구 등 분야별 부문회원(Sector Members)으로 608개 회원기관(ITU-D 328개; ITU-R 284개; ITU-T 314개; 중복가능)이 참여하고 있다. ITU는 현재 191개 회원국 장관급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인 전권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 4년에 한번씩 선출되어 전체 회원국을 대신하여 매년 ITU 활동을 감독하는 이사회(Council), 사무국(General Secretariat),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와 전기통신기술표준화 부문국(ITU-T), 전파통신 부문국(ITU-R), 전기통신개발 부문국(ITU-D)로 구성되어 있다. 각 활동이 진행되도록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 진행하는 사무국은 회의 등을 지원·보조하며, 권고 및 결정 사항을 발간·배포하고 국제협력 활동을 통한 대외 홍보 등을 맡고 있으며,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이하 ITU-T, -R, -D 부문별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TU는 2006년 개최된 ITU 안탈라 전권회의에서 IT환경변화에 기반한 새로운 전략계획을 채택하였고, 사무총장을 포함한 새로운 운영진을 선출하였다. 선출 운영

진에 따라 향후 ITU 사무 됨에 따라 2007~2011간의 ITU 활동을 위한 한국의 참여 전략을 새로이 수립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ITU 5선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ITU활동에 관한 감독을 포함한 4년간의 이사국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여 ITU운영과 관련한 한국의 영향력을 제고하고, WSIS를 포함한 ITU의 기본활동과 관련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여 ITU내에서의 한국의 비중 및 영향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제 2 장 2006년도 ITU 전권회의(PP-06) 주요 결과 및 합의

제17차 ITU전권회의는 2006년 11월 6일~24일간 터키 안탈라에서 개최되었으며 ITU 회원국 188개국 대표 2,557명 및 참관자 132명이 참가하였다. 동 회의는 ITU 이사국 선출 및 집행부 선출과 향후 4년간의 ITU전략 및 재정계획의 승인, 향후 ITU의 개혁 및 발전과 관련된 논의 및 관련 결정 등 현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수행하였다. 동 회의에서 채택된 2008~2011 전략계획, 재정계획을 포함한 권고와 결의들은 향후 4년간의 ITU의 활동방향과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대로 한국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06 전권회의에서 이루어진 사무총장, 차장 및 각 부문 국장을 선출하여 향후 10여년간의 ITU 운영진을 구성하였다.

ITU 전권회의의 결과는 헌장 및 협약 등의 ITU 기본문서의 재개정, ITU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결의 및 권고의 형태로 ITU PP-06 최종의정서에 포함되어 있다. 헌장 (Constitution)의 개정의 경우, RA 및 WRC의 개최주기, 기부금 공지와 관련된 절차적인 문제, 용어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다른 주요회의와 이사회 등에서 ITU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기되고 검토된 내용으로 회원국들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서문에서의 성별간 균형에 대한 주석 수정을 포함한 5개 조항을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다. 협약(Convention)의 개정은 읍저버 관련 조항의 개정, 재정 단위의 추가, 선거와 관련하여 동일한 직위에 대한 연속, 비연속 연임 가능 등을 29

개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다. 회의에 관한 일한 절차의 경우는 PP 시의 선거 일정을 포함한 4개 조항을 개정하였다. 결의의 경우 기존의 결의 중 이미 이행되었거나, 현재는 유효하지 않은 것은 폐지하였다. 지속적으로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 결의는 개정하고, 정보통신환경의 변화 및 ITU내부개혁등을 위하여 새로이 제기된 현안들은 신규결의로 채택하여 향후 4년간 ITU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동 결의 내용에는 다양한 현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이사회를 포함하여 ITU가 부문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결정된 사항들이 최종적으로 결의로 발의되었다.

2006 전권회의는 새로운 운영진을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비전과 경영철학을 가지고 향후 4년 길게는 8년간 운영되게 되었다. 신임 뚜레 사무총장은 이번 전권회의가 ITU의 업무를 제고하기 위한 많은 가능성을 열고, 정보통신과 ICT관련 선도적인 UN 전문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재확인하는 성공적인 회의였다고 평가하였다. ITU는 ICT의 발전에 따라 요구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당사자들의 참여와 다양한 새로운 이슈에 대한 ITU의 역할과 기여를 증대하여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1989년 전권회의에서 ITU 이사국 회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래 5번째 연속 진출함으로써, 정보통신 강국의 위상을 세계에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한국의 발전수준 및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반영한 것이며, 그간의 이사국으로의 활동에 대한 높은 평가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1952년 ITU를 가입한 이래 처음으로 ITU 선출직인 표준화국장에 ETRI의 박기식 박사가 입후보하여 선거활동을 펼쳤으며, 타 후보에 비해 늦은 선거활동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 및 남미권의 지지를 확보하는 등 매우 전향적인 예측인 가능한 상태에서 전권회의 및 선거에 임하였다. 결과는 아쉬웠으나 주요 국제기구 선거직 활동을 해보았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 경험이라는 큰 의의가 있겠다. 금번 시도는 한국의 기술뿐만 아니라 인력의 국제화를 시도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으며, 관련 선거 경험은 향후 국제기구의 선출직 진출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국제

전문인력 육성의 필요성 등의 교훈을 얻었다.

제 3 장 2007년 ITU 이사회 주요 논의

2007년도 이사회는 2007년도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11일간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ITU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46개 이사국 대표단 및 회원국 옵저버 등 35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본부 국제기구팀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2개 조로 나뉜 대표단이 교차 참석하였다. 전권회의에서 선출된 46개 이사국간 회의인 이번 이사회에서는 본회의와 재정 및 관리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재정 및 관리 상임위원회에서 재정, 예산, 인사 및 조직 관련 사항에 관한 논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형식으로 ITU의 예산 및 재정, 각 부문별 운영 계획 심의, 외부감사 권고 이행 사항 및 작업반 활동결과 보고, WSIS, '06년 전권회의의 후속 조치 이행 여부, 향후 행사 일정 검토 등 총 50여개 이상의 의제를 다루었다.

2007년도 ITU 이사회는 ITU 내 실질적인 사안에 대한 많은 결정을 내린 회의였다. 2008~2009 예산안 승인과 관련하여 ITU의 단위당 분담금을 증액 없이 318,000 CHF에서 동결시키고, 예산부족분은 예비비 계좌에서 쓰도록 하였고, 분담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재정구조의 문제와 예비비 계좌잔고의 고갈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신임 사무총장이 분담금 연체금 등 미납금 해결과 인건비 절감, 투명한 예산집행 등으로 지출을 축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여 재정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 회의였다.

ITU는 현재 날로 확대되어가는 IT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WSIS 후속조치의 이행 등과 연계하여 2015년까지의 활동 로드맵을 작성하고, ITU 역할에서 인프라 및 보안 영역 외에도 인력양성, ICT 활동, 문화적 다양성 등의 영역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ITU의 핵심임무(core mission)를 규정하는 작업에 공개협의 등을 통해 폭넓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업반

에서 내용이 진행되면 모든 의견을 취합하기로 하였다. ITU 개혁은 2007년 1월부터 도입된 성과 기반 관리(RBM)를 기반으로 전략계획·재정계획·실행계획 간의 연계 강화, Time Tracking System을 통한 비용 할당제, 서비스 수준 협정(SLA) 도입, KPI 도입 등을 주요 달성 목표로 선언하였다.

5선 이사국으로 연임되어 꾸준히 이사국 활동을 지속해온 우리나라는 2003년에 COG 회원, 2005년에 NCOG의 회원으로 선임되어 ITU개혁을 위한 이사회 감독그룹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금번 이사회에서도 MBG 구성 관련 기고문을 제출하여 논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번 2007년도 이사회에서는 운영예산그룹(MBG)의 신규 결성과 관련하여 논의 자체를 처음부터 주도하여 나가면서 우리나라 대표단의 전문성을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MBG 설립에 대한 기고서 발표를 통해 MBG가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개방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미국, 일본, 스페인 등 다수 주요 이사국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에 우리나라 기고서를 바탕으로 MBG의 임무, 구성 및 작업 방법에 대한 결의(안)이 마련되었고 최종 채택되는 성과가 있었다. 향후 MBG를 통해 매년 ITU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며, 이에 우리나라도 MBG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ITU 내 인적자원 및 조직개편 등과 관련하여서도 적극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회원국의 자발적 인력 기여는 ITU의 인건비 절감 및 사무국 직원의 업무 부담 감소 등에 효과적인 방안임을 제안하기도 하고, 일회적 자원퇴직제 실시안에 대해 산절감 효과 등 실효성 및 직원사기 저하, 투명성 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여, 이는 순수히 희망자에 한하여만 실시하는 것이며, 인건비 절감, 능력 있는 신규 직원채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사무총장의 답변을 얻어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텔레콤 행사의 개최지 선정기준 및 신청 마감일자 등을 포함한 개최지 선정계획 수립 등 투명한 절차 보장을 요구하여 사무총장은 텔레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마케팅을 포함한 전반적인 전략 및 활동 변화를 추진중임을 밝히고, 우리나라 의견을 받아들여, 향후 행사시에는 텔레콤 개최지 선정계획 및 기준을 공개하겠다는 응답을

받아내는 등 다양한 주제에 있어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을 적극 제시하고 이에 ITU의 답변 및 향후 대응을 이끌어내는 결실을 맺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단은 위와 같은 이사회 의제에 대한 총괄적인 대응 외에도 ITU와의 신규 협력 사업을 기획 협의하고, 전파분야 SG 의장단 진출을 위한 사전조정회의 참가 및 지지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2008년도 6월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OECD 장관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 4 장 2007년도 APT 주요 논의

APT는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sia-Pacific Telecommunity)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유일한 전기통신관련 전문 국제기구이다. APT는 역내 전기통신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간 협약에 의해 1979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32개 회원, 4개 준회원, 94개 협찬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APT의 조직은 총회(GA, General Assembly), 관리위원회(MC, Management Committee), 사무국(Secretariat)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회는 모든 회원국과 준회원으로 구성된 APT 최고 기관으로 정기적으로 3년마다 만나 전기통신연합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과 원칙을 수립하며 연간 예산과 지출의 한계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협정을 체결하고 개정한다. 총회는 매 정례회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APT 관리위원회는 총회에서 결정된 일반정책 및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수행된 결과들을 검토하는 위원회로서 APT 회원국과 준회원, 협찬회원 및 국제기구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APT 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년도의 사업 및 예산, 주요 회의의 결과들을 검토하고 차기년도의 사업과 예산안을 승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예산 및 실행 계획에 대한 검토와 사무국 구조조정 등 APT의 운영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계획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관리위원회에서는 2년마다 한 명의 의장과 두 명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2007년도 제31차 관리위원회는 2007년 11. 27(화)~11. 30(금)의 일정으로 우리나라

라 서울 리즈칼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회원국(28개국) 정부대표, 준회원(홍콩, 마카오) 기업회원(18개사) 등 130여명(장관급 3명 포함 국장급 이상 19명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국제기구팀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1명 참여하였다.

APT관리위원회에서는 2008년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와 차기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이루어졌다. 사무총장은 현 사무차장인 일본의 Mr. T. Yamada가 단독 출마하였으며, 사무차장에는 Mr. R. Box(호주), Mr. A. Kannan(말레이시아), Mr. M. Amir(몰디브), Mr. K. Pornsutee(태국) 등 4인인 입후보하였다. 총 34개 회원국 중 28개국이 투표에 참여하여 사무총장은 일본의 야마다 후보가 총 28표를 획득하여 1차에서 당선되었으며, 사무차장은 3차까지 가는 경합을 통하여 태국의 폰수티 후보가 18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APT의 주요 회원국들은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APT의 내부개혁을 신임 운영진이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중복된 활동내용 등으로 지속적으로 존폐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어온 연구반(Study Group)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이와 연계하여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APT 전체의 또는 각 사업계획들의 작업절차 및 방법에 대한 검토와 개정도 요청하였다. 또한 Fellowship을 포함한 APT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요청되었다. APT 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는 APT에 대한 현물기여를 통해 지원을 하고, 국내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우리나라의 현안을 회원국 대표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협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시연을 통해 우리나라 IT 산업에 대한 홍보기회도 마련하였다.

제 5 장 평가 및 전망

현재 ITU의 역할 변화 필요성에 대해 여러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ITU의 활성화 및 위상 강화를 위한 ITU 운영의 신뢰성,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등 내부 개혁에 대

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6년 전권회의에서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을 포함한 운영진이 선출되었으며, 향후 8년간의 ITU운영이 새로운 비전 하에 수행될 예정에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ITU 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ITU 활동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TU는 각 부문이 연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전파부문 및 표준화 부문의 경우, ITU의 체제에 맞추어 대응체제를 갖추고 정보통신부 본부의 해당 팀이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ITU 회원국 및 이사국으로서의 권한 및 책무 수행을 위한 전권회의와 이사회는 정보통신협력본부가 총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ITU 활동이 협력외교(정책포함)와 기술외교의 축으로 나뉘며, 기술외교에 해당하는 R 및 T부문의 대응체제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문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및 외교전략적인 면에서 충분치 않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MBG 및 이사회 작업반 등으로 관련 활동이 상시화되고 있는 이사회 활동 측면에서는 ITU의 5선 이사국 및 핵심회원국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협력본부가 IT 협력외교의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 전략을 수립하고, 본부내의 부문별 총괄들과 조정 및 조율하는 총괄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국제회의 유치, 의장직 진출, 핵심의제의 승인 대응 등에 있어서 총괄 본부가 결정권을 같은 위계로 양자간외교 및 외교통상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의 국제협력간의 전략적 연계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하는 것이 그 성과가 될 것이다. 부문별 대응체제의 강화는 기존의 전파 및 표준화 부문과 유사하게 ITU-D 부문 및 총괄(전권회의 및 이사회활동)의 대응체제를 총괄 본부 위계에 따라 강화시키고, ITU 연구위원회의 ToR을 표준화부문에 국한하지 말고 확대하여 전 부문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문별 본부 총괄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주요이슈에 대한 인지제고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위원회내에 부문간 정보교류를 강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일 것이다.

지난 2006년 5선 연임으로 20년간 이사국 지위에 오른 한국은 향후 ITU 선출직 및 주요 의장직 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ITU의 환경변화 및 ITU를 통한 우리나라 국익제고를 위해 장기적인 맥락에서 참여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ITU 개관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이하 ITU)은 현존 국제기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기구 중 하나로, 정보통신 분야 전반을 다루는 최대 국제기구이다. ITU는 기존의 국제전신연합(International Telegraph Union, 1865년 설립)을 중심으로 국제전파전신연합(International Radiotelegraph, 1906년 설립)을 1932년 통합하였으며, 1942년에는 전기통신, 전파통신, 위성통신, 방송 등의 정보통신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UN 전문기구(Special Agency)로 지정되어 독보적인 위상을 점하고 있다.

1. ITU의 목적 및 활동

ITU는 세계 경제와 정보사회의 도래가 머지 않은 지금,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 모든 인류가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 달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¹⁾ 전 세계의 공존공영을 이루기 위해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라는 전제 하에 ITU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 재정, 인적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ITU의 헌장 상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²⁾

- a)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 개선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회원국간 협력을 유지, 증진 시킨다.
- b) 개도국에 대한 전기통신분야 기술지원 및 촉진과 개도국 필요물자, 재원의 조

1) The ITU Mission: bringing the benefits of ICT to all the world's inhabitants

2) Art. 1., Chap.1.,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달을 촉진시킨다.

- c) 전기통신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용성을 증가시켜 일반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설비 개발과 효율적 운용을 촉진시킨다.
- d) 전 세계인에 대한 전기통신의 혜택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e) 평화적 국제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증진시킨다.
- f) 상기 목적달성을 위한 회원국들의 활동을 조화시킨다.
- g) 국제적 수준에서 전기통신과 관련된 국제 또는 지역의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범세계적 정보경제 및 사회 속에서 전기통신문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접근을 촉진한다.

또한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ITU에서 전개하고 있는 활동은 아래와 같다.³⁾

- a) 각국 무선국간 유해한 혼신 방지를 위하여 효율적인 주파수 스펙트럼을 할당하고 할당 주파수의 등록을 실행한다.
- b) 각국 무선국간 유해한 혼신을 제거하고 주파수 스펙트럼의 이용도를 제고시킨다.
- c) 서비스 품질향상과 함께 범세계적인 전기통신표준화를 촉진한다.
- d) 국제연합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 또는 자체 자원의 이용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개도국의 기술지원, 통신장비와 망의 신설, 개발 및 향상에 노력함으로써 국제협력을 촉진시킨다.
- e) 전기통신설비들의 개발과 향상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조정한다.
- f) 전기통신의 건전한 재무관리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통신 제공을 보장하는 최저요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회원국간 협력을 촉진시킨다.
- g) 전기통신업무의 협력을 통해 인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을 촉진한다.
- h) 전기통신에 관한 연구, 규칙 제정, 결의 채택, 권고 및 의견작성, 정보의 수집 및 발표 등을 수행한다.

3) Art. 1., Chap.1.,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 각국에서 가장 고립된 지역에 전기통신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사회사업 개발과 관련하여 그 지원을 목적으로 국제금융 및 개발기금들과 함께 재원확보를 추진한다. 2007년 12월 현재, ITU에는 191개국이 회원국(Member State)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사업자·연구기관·국제기구 등 분야별 부문회원(Sector Members)으로 608개 회원기관(ITU-D 328개; ITU-R 284개; ITU-T 314개; 중복가능)이 참여하고 있다. 1998년에는 준회원(Associate Members) 제도가 신설되어 ITU-T, -R의 연구반 중 한 개 연구반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회원국은 ITU의 회의에 참가하고, 이사회에 피선될 자격이 있으며, 전권회의, 세계 회의 행사, 부문총회 및 연구반 회의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부문회원은 소속 부문의 활동에 전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지만 투표권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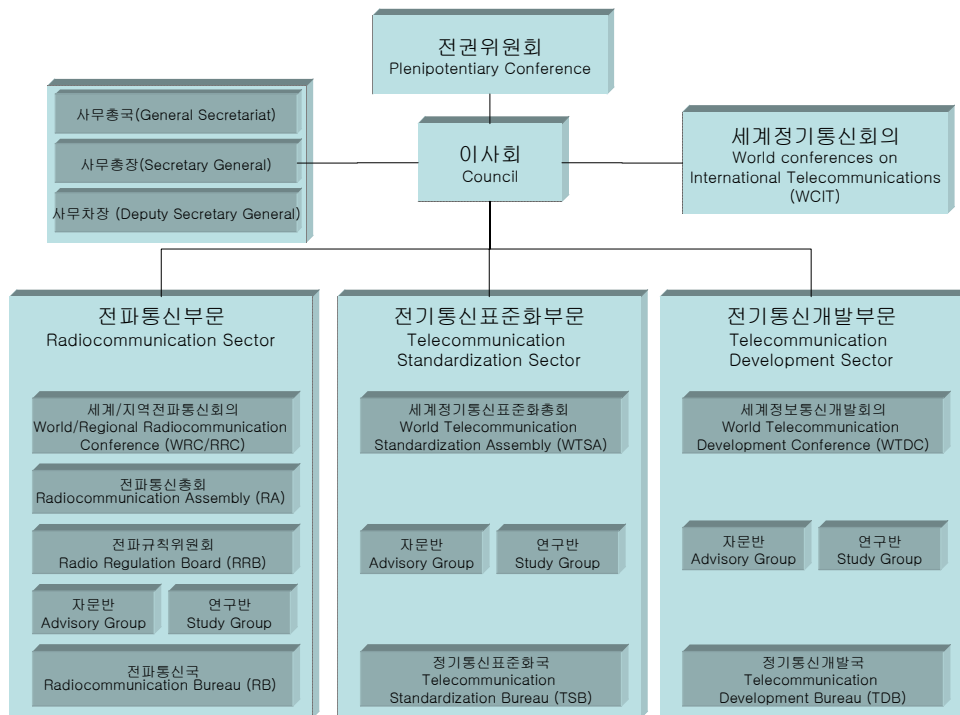
2. ITU의 구성

ITU는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고도화,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 외에도 양적으로 확대되어가는 정보통신기술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추가전권회의에서 대규모 구조개편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ITU는 현재 191개 회원국 장관급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인 전권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 4년에 한번씩 선출되어 전체 회원국을 대신하여 매년 ITU 활동을 감독하는 이사회(Council), 사무국(General Secretariat),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와 전기통신기술표준화 부문국(ITU-T), 전파통신 부문국(ITU-R), 전기통신개발 부문국(ITU-D)로 구성되어 있다.

부문별로 전파통신부문(ITU-R)은 세계전파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전파통신총회(Radiocommunication Assembly), 전파규칙위원회(Radio Regulation Board), 전파통신국(Radiocommunication Bureau), 전파통신자문그룹(Radiocommunication Advisory Group), 연구그룹(Study Group)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적인 성격의 전파통신관련 문제를 처리하고 주파수 할당 및 사용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전파통신서비스 및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특성과 운영절차에 대한 권고를

개발하고 있다.

(그림 1-1) ITU 조직도



정보통신표준화부문(ITU-T)은 세계정보통신표준화총회(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정보통신표준화국(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ureau), 정보통신표준화자문그룹(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연구그룹(Study Group) 및 산하 작업반(Working Party)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능은 급속히 확장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안정되고 빠른 전송보장과 연구그룹을 통한 표준안 마련, 다국간 포럼제공을 통한 경쟁 시장에서 소비자 및 기업간 중재 역할, 표준 개발을 통한 새로운 광대역 통신기반 설비 체계 선도 및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접근 시도 등이다. 특히 최근에는 NGN, 정보보안, RFID 등의 분야에 대

한 표준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 그룹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이에 대한 활발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개발부문(ITU-D)은 정보통신개발국(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Bureau), 세계정보통신개발회의(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정보통신개발자문그룹(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Advisory Group), 연구그룹(Study Group)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국이 요청하는 국가 통신문제에 대한 연구 및 대안을 검토하고 개발도상국의 정보통신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적, 행정적 정보 수집과 발간을 수행한다. 또한 연구그룹을 통하여 정보통신개발전략 및 재정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과 공공·민간 부문조직들을 위한 포럼을 제공하며, 개발 및 재정기관들과 협력, 협조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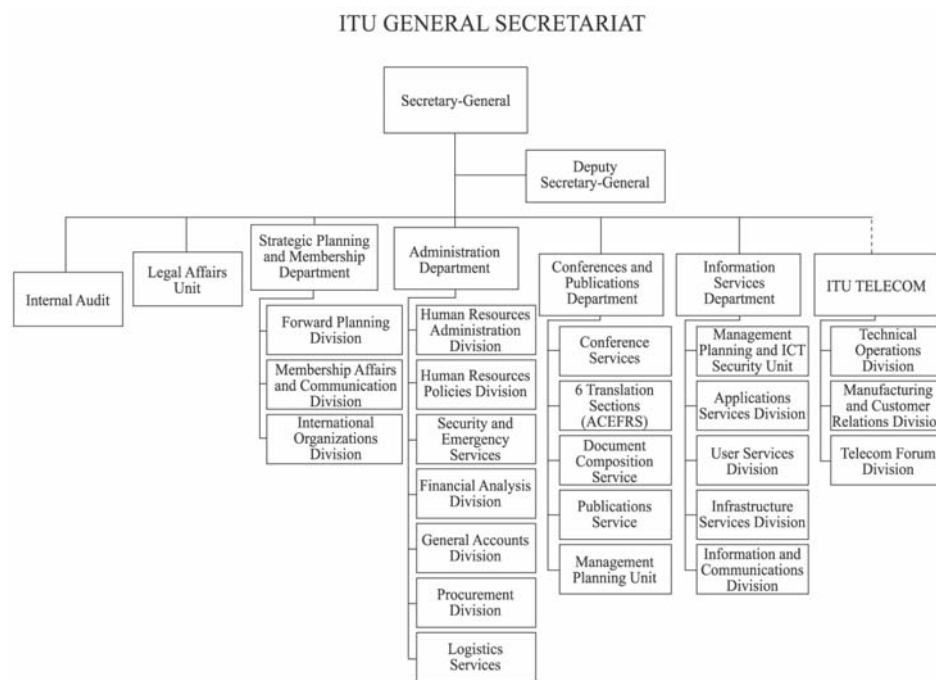
각 활동이 진행되도록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 진행하는 사무국은 회의 등을 지원·보조하며, 권고 및 결정 사항을 발간·배포하고 국제협력 활동을 통한 대외 홍보 등을 맡고 있으며,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이하 ITU-T, -R, -D 부문별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ITU 사무국은 2006년 11월, 터키 안탈라에서 개최된 전권회의의 결정에 따라 비율 절감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편을 단행하여 2007년 6월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조직개편은 주로 부서통폐합 및 업무 이관이라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인건비 절감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개편을 통해 구성된 신규 ITU 사무국 조직은 [그림 1-2]와 같다.

신규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2007년 이사회에서 논의되기도 했던 바, 제3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약술하자면 인사 및 사회보장 부서와 재정 부서를 통합하여 관리과(Administrative Department)를 설립하며, 사무국 차원에서 공통서비스과(Common Service Department)를 없애고 각 국으로 동 기능을 이관하도록 하였으며, 전략 기획 및 회원관리과(Strategic Planning and Membership Department)를 설립하여 ITU

활동의 증추가 되도록 하였다.

[그림 1-2] ITU 사무국 조직도



제2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ITU는 2006년 개최된 ITU 안탈라 전권회의에서 IT환경변화에 기반한 새로운 전략계획을 채택하였고, 사무총장을 포함한 새로운 운영진을 선출하였다. 선출 운영진에 따라 향후 ITU 사무 됨에 따라 2007~2011간의 ITU 활동을 위한 한국의 참여 전략을 새로이 수립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ITU 5선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ITU활동에 관한 감독을 포함한 4년간의 이사국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여 ITU운영과 관련한 한국의 영향력을 제고하고, WSIS를 포함한 ITU의 기본활동과 관련한 한국

의 참여를 확대하여 ITU내에서의 한국의 비중 및 영향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IT부문의 강국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실물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의 활용, 즉 국제적 리더쉽, 영향력 혹은 협상력 등을 통해 국익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위상제고를 통해 리더쉽 및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적절한 대응전략을 기반으로 한 참여를 통해 주요 이슈에서 우리나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다른 국제관계 및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우리나라에 실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반기문 총장의 UN 사무총장 진출이 한국의 국제기구 내에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ITU를 포함한 IT국제기구에 대한 적절한 참여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 역시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ITU 및 관련 주요 국제기구, 논의를 살펴보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 장에서는 ITU 및 APT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2개 국제기구의 조직, 기능, 역사 등을 개관하고 다음 장에서는 ITU의 내부개혁을 중심으로 한 개혁논의의 추이, 2007 이사회의 주요 이슈와 결과, 이사회 작업반의 활동을 개관하고, ITU의 5선 이사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ITU 대응 전략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는 ITU에 있어서의 합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 장에서는 제 31차 APT 관리위원회의 주요 의제 및 결과를 중심으로 APT의 핵심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전략적인 국제기구활동 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수립의 기본이 되며, ITU를 포함한 국제기구활동의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 및 ITU 이사국 활동 강화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기를, 또한 우리의 다음 목표인 ITU의 선출직 및 의장직 진출 등을 위한 기반 확립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제 2 장 2006년도 ITU 전권회의(PP-06)의 주요 결과 및 합의

제 1 절 ITU 전권회의 개관

전권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는 ITU의 최고위 정책결정기구로 매 4년마다 개최된다. 전권회의는 ITU의 일반정책을 수립하고, 5년간의 전략 및 재무 계획을 채택하고, ITU의 고위관리자, RRB위원, 이사국을 선출함으로써, ITU의 향후 역할을 결정하고, 융합, 요금,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와 전자상거래등과 같은 사안들의 전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할 것이다. ITU의 헌장 8조에 명시되어 있는 전권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ITU 헌장 1조에 명시된 연합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일반정책을 결정
- b) 이전 전권회의의 이후의 ITU의 활동 및 ITU의 정책 및 전략계획수립에 관련된 이사회의 보고서를 검토
- c) ITU 예산의 근거를 수립하고, 헌장 50항에 명시된 보고서와 관련한 결정을 고려하여 차기 전권회의의 시까지의 ITU의 활동의 제반 측면을 고려하여, 동기간 동안의 관련 재정 상한을 결정
- d) 헌장의 161 D~161G항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를 이용하여, 회원국들이 발표한 분담금 단위를 기반으로 하여 차기 전권회의의까지의 기간 동안의 총 분담금 단위수를 결정
- e) ITU의 인사문제에 대한 일반지침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모든 직원들의 기본 임금, 기준임금표와 수당 및 연금시스템을 결정
- f) ITU의 회계를 검토하고, 적합할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
- g) 이사국 선출
- h) ITU의 선출직 인원인,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각국의 국장을 선출

- i) RRB 위원을 선출
- j) 회원국들이 현장의 55조 및 협약의 해당 조항에 따라 제출한 현장 및 협약의 개정에 대한 제안을 검토하고 타당할 경우 이를 채택
- k) ITU와 다른 국제기구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하고, 이사회가 ITU를 대신하여 이러한 국제기구들과 체결한 잠정협약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취함
- l) ITU의 총회 및 기타 회의의 Rules of Procedure를 채택하고 수정
- m)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통신관련 문제들을 다룸

〈표 2-1〉 ITU 전권회의 및 주요 회의 일람

| 회의 | 개최기간 | 개최장소 | 주요 내용 |
|------|-------------------------|----------------|--|
| 제1차 | 1865 | 파리 | ○ 국제전신연합 창설 |
| 제2차 | 1868 | 비엔나 | — |
| 제3차 | 1885 | 베를린 | ○ 국제전화 관련 최초 규정 |
| 제4차 | 1906 | 베를린 | ○ 최초 국제무선전신협약 체결 |
| 제5차 | 1927 | 워싱턴 | ○ 국제무선자문위(CCIR) 설립 |
| 제6차 | 1932 | 마드리드 | ○ 국제전기통신연합 개명 창설 |
| 제7차 | 1947. 7. 2~ 10. 2 | 미국 아틀랜틱시티 | ○ 주요의제, 결정사항, 현재의 ITU기본체제를 확립 ○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 및 관리위원회 설립 |
| 제8차 | 1952. 10. 3~ 12. 22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 신 국제주파수표를 결의 |
| 제9차 | 1959. 10. 14~ 12. 21 | 스위스 제네바 | ○ 기술협력활동의 확충을 위하여 연합목적 및 관련기관의 업무 개정 |
| 제10차 | 1965. 9. 14~ 11. 12 | 스위스 몽트뢰 | ○ 창립 100주년행사 ○ 주관청회의를 세계, 지역의 2중으로 조정 |
| 제11차 | 1973. 9. 14~ 10. 25 | 스페인 말라가 토레몰리노스 | ○ 국제전기통신협약 서명('75. 1. 1발효) |
| 제12차 | 1982. 9. 28~ 11. 7 | 케냐 나이로비 | ○ 나이로비 협약 서명('84. 1. 1발효) |

| 회의 | 개최기간 | 개최장소 | 주요 내용 |
|------------|------------------------|-----------|---|
| 제13차 | 1989. 5. 23~ 6. 30 | 프랑스 니스 | ○ 현장과 협약의 분리 ○ 고위위원회 조직개편안 작성 |
| 추가 전권회의 | 1992. 12. 7~ 12. 22 | 스위스 제네바 | ○ 조직개편(전파통신, 표준화, 개발부문) |
| 제14차 | 1994. 9. 19~ 10. 14 | 일본 교토 | ○ 추가전권회의의 개최 근거 규정 신설 ○ 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신설 ○ 민간분야의 ITU활동참여 확대 |
| 제15차 | 1998. 10. 12~ 11. 6 | 미국 미네아폴리스 | ○ ITU에 부문회원 직접가입 신청가능 ○ 연구반 최종결정권한 부여 ○ 수익자부담원칙적용 결정 |
| 제16차 | 2002 | 모로코, 마라케쉬 | ○ ITU의 개혁 내부역량 강화 |
| 제17차 | 2006 | 터키, 안탈라 | ○ ITU의 목적 및 기능 |

1. 창립~니스 전권회의

유럽내 국제전신망의 구축에 있어서의 당면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1865년 창립된 국제전신연합(International Telegraph Union)이 오늘날의 ITU의 모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전신연합은 1932년 마드리드 회의에서 국제전신회의와 국제무선통신회의를 통합하여 오늘 날의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으로 재탄생되었다.

ITU의 구조 및 기능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1947년의 아틀란타 전권회의를 기점으로 ITU가 UN의 특별기구(Special Agency)가 되어 범세계적인 국제기구로 격상됨과 동시에 전신, 전화관련 기술자들의 모임에서 UN의 기본목적 달성을 목표로 하는 고위급회의로 진화하게 되었다. 둘째로 전권회의, 관리위원회등 의결 및 심의기관의 설립과 국제 주파수 등록위원회(IFRB)가 창설, 3개의 자문위원회(CCI)가 상설기관화 등 기능 및 조직이 확립되었다.

1965년의 몽트뢰(Montreux) 전권회의에서는 신생독립국의 급증과 가입으로 인하여 회원국수가 133국에 이르게 되는데(1959년 제네바 전권회의 시에는 96개국) 이로 인하여 ITU내에서도 발전의 격차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1973년의 말라가 토레몰리노(Malaga Torremolino) 전권회의에서는 회원국의 자격을 주권국가로 한정하였으며 관리이사국의 수를 29개국에서 36개국을 증가시켰다. 또 기술적인 차원에서 개도국의 의견이 반영된 우주자원의 공평이용원칙이 채택되었다. 또 ITU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협약체계를 영구적 성격을 갖는 기본규정과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반 규칙으로 2원화하였다.

1982년 나이로비 협약은 1973년의 Malaga Torremolino 협약을 폐기, 대체하는 것으로 개도국 및 후진국의 전기통신발전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원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대두되었다. 또 회의에서는 이사국 수를 41개로 확대하였다

1989년 니스에서는 ITU 협약을 헌장과 협약으로 이원화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관리이사국의 수도 43국으로 증대되었다. 또 BDT가 신설되어 전기통신부문의 개발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2. 추가전권회의

니스 전권회의에서 ITU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ITU의 헌장과 협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추가전권회의를 개최하도록 결의하였다. 1992년 추가전권회의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기능 및 구조를 대폭 개편함으로써 ITU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우선 니스전권회의에서 이미 분리, 개정된 헌장과 협약이 새로 개편된 ITU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대폭 재개정되었다. 헌장은 ITU의 기본구조 및 기능, 그리고 전기통신에 관련된 일반규정을 명시하여 급변하는 통신환경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반면, 협약은 개편된 각 분야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각종절차, 통신서비스 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정을 명시하여 필요시 환경변화에 융통성 있게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개정된 헌장과 협약을 근거로 ITU는 기존의 구조 및 기능을 대폭 정비하여 크게 전파통신(ITU-R), 전기통신표준화(ITU-T), 전기통신개발분야(ITU-D)분야로 3개 분야로 재구성되었다. 셋째, ITU의 행정 및 기획부문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대응하

여 전권회의의 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였으며 사무국 및 이사회의 권한확대를 통한 ITU의 전략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관리위원회를 이사회로 개칭하여 일반관리업무 외에 전략정책의 검토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미 ITU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RPOA, SIO 외에 민간부문의 참여확대를 통하여 ITU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다. 현장과 협약의 개정 등 획기적인 변화를 이룩한 1992년 추가전권회의는 개혁의 종결이 아니라 앞으로의 ITU의 지속적인 개혁의 기반구축이라는 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3. 교토 전권회의

추가전권회의에서 개혁의 틀을 마련한 ITU는 교토전권회의에서 ITU의 향후 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의 1(ITU의 전략계획)과 이후의 ITU의 개혁의 기본방향이 되는 결의 15(ITU 각부문의 권리와 의무검토)와 결의 39(연합의 재정적 기반강화)가 채택되었다.

ITU의 전략계획에 관한 결의 1은 1995~1999기간과 그 이후시기에 걸친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며,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전기통신부문의 역할 증대에 따른 ITU의 정책방향 정립에 관한 것이다. 전략계획의 주요내용은 ITU의 기반 강화, ITU의 활동 범위 확대, 국제활동에서의 ITU의 역할 제고로 크게 나뉘어진다.

ITU 각 부문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검토에 관한 결의 15는 부문회원의 참여 증대를 권유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활동에 있어 참여조건을 보다 명확히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부문회원들이 ITU활동에 기여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그들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참여를 촉진시키도록 결의하고 있다.

ITU의 재정 기반강화에 관한 결의 39는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이미 한계성을 노정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ITU의 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⁴⁾ 업무의 효율화, 비용회수, 분담금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개선방향에 관한

4) 나이로비 전권회의시기를 전후로 한 시기로부터 ITU의 기부단위(Contributory Unit)

결의를 하고 있다.

4.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

추가전권회의에서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ITU의 구조와 기능의 개혁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전권회의 직후부터 추가적인 개혁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ITU 2000 작업반이 구성되어 구조변화와 관련 현장협약의 개정, ITU의 재정적 기반, 회원의 권리와 의무, 작업방법, 예상되는 개혁 특히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기통신부문 전반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었다. 이러한 ITU 2000 작업반과 RevCom의 활동에 근거하여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에서 현장 및 협약개정을 포함하여 ITU의 개혁에 관한 많은 결의가 이루어졌다.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에서 현장 및 협약의 개정 및 기타 관련 결의로 나타난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부문의 참여활성화와 관련된 것이다. 첫째, 현장 및 협약 상에서 기존의 member(small m)으로 지칭되던 민간부문 회원들을 부문회원 (Sector Member)으로 변경한 것은 민간부문의 위상, ITU활동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책임과 권한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민간부문 참여활성화를 위해 관할국 정부의 반대가 없는 한 부문회원 신청자가 직접 ITU에 가입을 신청하고 제반회의에 독자적으로 발언 및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는 회원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규제와 사업부문이 분리됨에 따라 규제부문만을 담당하는 주관청이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된 것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전체적인 ITU의 발전과정에서 볼 때, 회원국의 분담금으로부터 재원 충당이 이미 정점을 넘어 감소단계에 이르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특히 현재의 ITU의 총예산의 약 87%를 차지하는 회원국 분담금 뿐 아니라 부문회원 분담금 수입도 감소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ITU 재정적기반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교토전권회의를 전후로 하여 회원국으로부터의 분담금은 4.59%, 부문회원은 7.17%, 평균 4.94% 감소하였다. 이러한 분담금의 감소에 반비례하여 회원국과 부문회원의 요구는 증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소한 분담금과 관련한 제도의 개혁이 없이는 재정기반의 약화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을 부여하였다. 셋째, 소규모 민간회원의 ITU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준회원(Associate member)를 신규로 신설하였다. 또한 기구의 효율적 운영과 민간부문의 참여증대를 위하여 연구반 자체에 최종 결정권한을 부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였으며, 기구의 재정기반 강화를 위하여 비용회수 원칙과 각종활동에 수입자 부담원칙을 도입키로 결정하였다.

전권회의에서 채택한 1999~2003년의 ITU의 전략계획 중의 ITU 개혁관련 내용은, 우선 국제전화 정산료 협정, 통신망 접속 지침, 인터넷 도메인 네임 관리 등 다자간 협력이 필요로 되는 분야에 있어서 ITU의 역할강화, 범세계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ITU의 기여 증대,⁵⁾ 회원국의 전기통신 규제완화 촉진유인, ITU 조직의 효율성 증대, 선·후진국간의 정보통신 격차 해소노력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5. 마라케쉬 전권회의

16차 마라케쉬 전권회의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향후 4년간 적용될 분담금 상한 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4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나 최근의 세계경제의 불황 및 통신시장환경의 악화로 인한 재정적 제약과 ITU의 개혁 추진에 대한 유립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불만으로 인하여 몇번의 표결까지 거치는 논란이 있었다. 그 결과, 분담금 상한은 현상 유지와 분담금 상한 증대의 절충안이 채택되었으며 회원국의 최종 분담금발표에 따라 회원국의 총 분담금 단위가 기존 대비 22 Unit가 감소한 336 Unit로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라 수입지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무국에서 직원감소를 포함한 강력한 비용절감 프로그램의 추진이 불가

5) 이와 관련하여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에서는 정보사회 정상회담(WSSIS)에 관한 결의 13을 채택하였다. UN 사무총장 주재하에 개최되는 동 정상회담개최에 있어서 ITU역할 검토를 이사회에 지시함으로써 동 회의의 개최를 ITU가 주도적으로 준비하여 ITU가 경제, 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정보통신부문의 발전을 관한 적절한 방안을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기구임을 확인하고 범세계적인 정보사회구축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주도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하게 되었다. ITU의 재정기반의 약화에 대한 우려는 통신부문의 민영화에 따른 사업부문과 정책부문의 분리, 자유화 및 경쟁도입에 따른 국내 시장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이미 예상되었던 부문이며 ITU 개혁을 위한 논의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부분인데, 16차 전권회의의에서 실제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향후, 비용절감을 위한 작업의 효율화 및 ITU의 구조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2년 추가전권회의의부터 10년이 지난 마라케쉬 전권회의의는 새로운 개혁을 시작하는 시발점이 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전권회의의에 시작된 개혁은 매우 역동적으로 이루어져,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의에서 전면적인 현장 및 협약 개정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으나 급변하는 통신시장 및 규제환경의 변화는 추가적인 개혁을 요구하여, 마라케쉬 전권회의의에서도 WGR의 작업을 기반으로한 추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ITU의 개혁은 환경변화 속에서 ITU가 현재의 위상을 유지하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목표이다.

제 2 절 2006년도 ITU 전권회의의 주요 논의

제17차 ITU전권회의의는 2006년 11월 6일~24일간 터키 안탈라에서 개최되었으며 ITU 회원국 188개국 대표 2,557명 및 참관자 132명이 참가하였다. 동 회의는 ITU 이사국 선출 및 집행부 선출과 향후 4년간의 ITU전략 및 재정계획의 승인, 향후 ITU의 개혁 및 발전과 관련된 논의 및 관련 결정 등 현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수행하였다.

동 회의에서 채택된 2008~2011 전략계획, 재정계획을 포함한 권고와 결의들은 향후 4년간의 ITU의 활동방향과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대로 한국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06 전권회의의에서 이루어진 사무총장, 차장 및 각 부문 국장의 선거의 경우, 전파국장을 제외하고는 8년 연임을 하였던 전임자를 이어 ITU의 운영을 담당하는 인사를 선출한 것으로 상당한 변화

를 기대하게 하고 있다.

우즈미 ITU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ITU가 그 동안 3세대 이동통신, 인터넷전화, 디지털TV, 차세대네트워크 등 신규 기술 분야에 있어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WSIS의 활동은 ITU의 위상을 강화하였으며, 인터넷 가버넌스는 ITU의 중요 역할로 대두됨과 ITU가 기술적인 전문그룹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개발과 이를 통한 인류 공헌관련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을 강조하였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ITU도 변모할 것이며, 정보사회 구현에 필요한 ITU의 역할 강화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이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역할 모색이 될 수 있는 PP-06이 되길 희망하였다.

개최국인 터키는 정보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을 밝히고,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R&D를 통한 신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정보통신산업의 민영화를 통해 경쟁적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미국은 ITU가 WSIS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WSIS결과 수행에서 네트워크 인프라와 보안과 관련된 활동의 주체가 되었음을 강조 정보통신기술이 교육, 문화, 정치, 의료 등 다양한 방면에 혜택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촉구와 정보통신발전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ITU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과 재정 강화를 역설하였다. 중국은 모두를 위한 정보사회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격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중국의 정보격차해소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이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정보사회 구축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WSIS의 결과를 반영하여 ITU가 국제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ITU가 제네바 및 튀니스 WSIS를 통해 전 세계에 걸친 다양한 기관들과 연합을 맺었으며 ITU가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정보통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ITU가 다양한 표준기구 등과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재정 및 인력이 필요하며 일본이 ITU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을 피력하였다. 한국은 LCD 모니터, 휴대전화 등, 한국이 이룩한 급속한 정보통신 발전 현황을 소개하고, 특히

전자정부를 통한 공공부문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고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강조하고 WSIS의 결과반영을 통한 ITU 역할의 재정립과 이의 수행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표명하였다.

본 절에서는 2006 전권회의의 크게 주요 결정 및 결의 등 결과물에 대한 분석, 사무총장을 포함한 선출직 직원 선거 및 이사국 선거 등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한국의 활동 성과에 대한 분석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2006년도 전권회의의 주요 결정 및 결의

ITU 전권회의의 결과는 헌장 및 협약 등의 ITU 기본문서의 재개정, ITU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결의 및 권고의 형태로 ITU PP-06 최종의정서에 포함되어 있다.

헌장(Constitution)의 개정의 경우, RA 및 WRC의 개최주기, 기부금 공지와 관련된 절차적인 문제, 용어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다른 주요회의와 이사회 등에서 ITU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기되고 검토된 내용으로 회원국들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서문에서의 성별간 균형에 대한 주석 수정을 포함한 5개 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다.

협약(Convention)의 개정은 읍저버 관련 조항의 개정, 재정단위의 추가, 선거와 관련하여 동일한 직위에 대한 연속, 비연속 연임 가능 등을 29개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다.

회의에 관한 일한 절차(General Rules and Procedure)의 경우는 PP 시의 선거 일정을 포함한 4개조항을 개정하였다.

결의의 경우 기존의 결의 중 이미 이행되었거나, 현재는 유효하지 않은 것은 폐지하였다. 지속적으로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 결의는 개정하고, 정보통신환경의 변화 및 ITU 내부개혁 등을 위하여 새로이 제기된 현안들은 신규결의로 채택하여 향후 4년간 ITU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결의는 31개로 결의 11번의 경우, 유럽 TELECOM 유치 후 이를 철회한 불가

리아의 제안으로 전시회/포럼 개최장소의 숙박요금이 정상가 보다 저렴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 삽입되었으며, 결의 71 2008~2011 전략계획에서는 각 부문의 목표 및 결과물에 대한 각주(예산 가용성등 표기)를 일괄 삭제하였다.

〈표 2-2〉 PP-06 삭제 결의

| 번호 | 제 목 |
|-----|--|
| 11 | 세계 및 지역 전기통신 전시회 및 포럼 |
| 14 | ITU 부문회원의 권리와 의무 인지 |
| 21 | 국제 전기통신망에서의 대체 통화수단에 관한 특별 조치 |
| 22 |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수입의 배분 |
| 25 | 지역 사무소 강화 |
| 30 | 최저개발국 및 도서개발국을 위한 특별 조치 |
| 34 | 전기통신재건을 위한 특별 국가 원조 및 지원 |
| 36 | 인류적 지원을 위한 통신/ICT 서비스 |
| 41 | 연체 및 특별 연계계좌 |
| 48 | 인력자원 관리 및 개발 |
| 64 | 현대식 전기통신 설비 및 서비스에의 무차별적 접근 |
| 68 | 세계 통신 및 정보사회의 날 |
| 70 | 모두를 위한 정보사회를 향한 ITU내의 성평등 향상 |
| 71 | 2008~2011 전략계획 |
| 72 | ITU에서의 전략계획, 재정계획, 운영계획의 연계 |
| 77 | ITU의 향후 컨퍼런스, 총회 및 포럼 |
| 91 | ITU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용회수 |
| 94 | ITU 회계 감사 |
| 99 | 팔레스타인의 ITU 위상강화 |
| 101 | 인터넷프로토콜(IP) 기반 망 |
| 102 | 인터넷 및 인터넷 자원(도메인명 및 주소) 관련 ITU의 역할 및 국제 공공 정책 이슈 |
| 111 | ITU 회의 일정 |
| 119 | 전과규칙위원회(RRB)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
| 122 |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의 역할 진화 |
| 123 | 개도국과 선진국의 표준격차 해소 |
| 124 |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신규 파트너십에 대한 지원 |
| 126 | 세르비아 방송 및 전기통신시스템을 재건하도록 하기 위한 원조 및 지원 |
| 128 | 아메리카 대륙의 접속성 아젠다 및 퀴토 행동계획에 대한 지원 |
| 130 | 정보통신망 보안에 있어서의 ITU 역할의 강화 |
| 131 | 정보통신지표 및 커뮤니티 접근성 지표 |
| 133 | 다중 언어 도메인명의 관리에 있어서의 회원국 주관청들의 역할 |

폐지된 결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거나, 다른 결의내에 포함되었거나, 기타 등의 이유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이다.

〈표 2-3〉 PP-06 폐지 결의

| 번호 | 제 목 |
|-----|--|
| 24 | 세계통신발전에서 ITU의 역할 |
| 26 | 개도국을 위한 ITU의 기술 지원 및 자문 제공 능력 향상 |
| 27 | UNDP 등 UN 내 기타 프로그램 및 재정지원에 ITU의 참여 |
| 28 | 기술협력을 위한 자발적 성격의 특별 프로그램 |
| 29 | 커뮤니케이션 발전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 |
| 31 |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을 위한 전기통신 기반구조와 정보통신기술 |
| 65 | ITU 정보서비스의 원격접근 |
| 73 | WSIS |
| 79 | 국제전기통신규칙(ITR) |
| 82 | 연구과제 및 권고의 승인 |
| 85 | 위성망 등록 절차개선 |
| 87 | 위성망 국제등록 대표 주관청의 역할 |
| 90 | 연체금에 대한 부문회원의 부담금 검토 |
| 92 | 사무총국 또는 ITU 부문국의 요청에 의하여 BDT에서 수행하는 활동 비용의 내부 송장 |
| 95 | 1994년~1997년 ITU 결산 승인 |
| 97 | 직업병 |
| 104 | ITU 회의 문서의 양과 비용 절감 |
| 105 |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행동의 필요 |
| 106 | ITU 구조 검토 |
| 109 | 옵저버 관련 조항의 검토 및 통합 |
| 113 | WSIS |
| 115 | ITU의 6개 공식언어 및 작업언어의 동등한 사용 |
| 116 | 1998~2001 ITU 결산 승인 |
| 117 | RCC에서 VHF와 UHF 주파수대역 지상망 텔레비전과 방송을 위한 방송 지역 결정 |
| 120 | RA-03 및 WRC-03 |
| 121 |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검토 |
| 129 | 정보격차해소 |
| 132 | 제네바 외교 공동체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ITU의 지속적인 지원 |

〈표 2-4〉 PP-06 신규 결의

| 번호 | 제 목 |
|-----|---|
| 134 | 이사국 회원국 수 |
| 135 | 통신/ICT 개발에서 개도국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제공과 적절한 국가/지역/지역간 프로젝트 수행에서 ITU의 역할 |
| 136 | 재난관리를 위한 정보통신의 활용 |
| 137 | 개도국의 NGN 보급 |
| 138 | 규제자를 위한 세계심포지움 |
| 139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통신 및 정보통신 기술 |
| 149 | WSIS 결과 이행에 있어서의 ITU의 역할 |
| 141 | WSIS와 관련된 ITU 활동에의 적절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대한 연구 |
| 142 | ITU의 헌장 및 협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검토 |
| 143 | 개도국과 관련된 ITU 문서보급의 경제전환국에게로 확대 |
| 144 | 제네바 이외서 개최되는 ITU 회의에 대한 개최국과의 모범 협약서 마련 |
| 145 | 옵저버의 ITU 회의 참여 |
| 146 | ITR 검토 |
| 147 | ITU 관리 및 기능 연구 |
| 148 | 사무차장의 역할 및 기능 |
| 149 | ICT 사용에서 보안강화와 관련된 정의 및 용어 연구 |
| 150 | 2002~2005년도 ITU 결산 승인 |
| 151 | ITU 결과기반관리의 이행 |
| 152 | 부문회원 및 준회원의 비용분담의 사후조치 및 관리의 개선 |
| 153 | 이사회 및 전권회의 일정 |
| 154 | ITU의 6개국어의 동등한 사용 |
| 155 | 이사회 예산관리그룹(MBG) 구성 |
| 156 | 컨퍼런스의 일정계획 |
| 157 | ITU의 프로젝트 집행기능 강화 |
| 158 | 이사회회의 고려를 위한 재정 이슈 |
| 159 | 레바논 전기통신망 재건을 위한 원조 및 지원 |
| 160 | 소말리아 원조 |
| 161 | 콩고공화국 전기통신망 재건을 위한 원조 및 지원 |

2006 안탈랴 전권회의의에서 채택된 신규 결의는 아래와 같으며, 결의의 주요내

용은 다음의 2006 전권회의의 주요 논의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2006년도 안탈라 전권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가. 2008~2011 재정계획

2008~2011년도 재정계획(안)에 대한 주요 이슈에 대해 Com6에서 대부분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전체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언어 비용의 지출 상한과 관련하여서는 번역, 문서처리 비용과 함께 통역 비용도 포함시키고 85M CHF를 언어 비용의 상한으로 결정하였다.

분담금 단위 변경에 대한 이사회 권한 부여와 관련하여서는 2008~2009년도 기부금 단위에 대해 본 전권회의에서 정한 기부금 단위 인상 가능 비율에 대해 개도국은 2%, 선진국은 1%를 주장함에 따라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는 운영의 효율성을 통한 지출의 감소를 우선시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1%를 지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인상 가능 비율을 1%로 결정하였다.

우선순위에 근거한 비용 절감 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절감 옵션에 대해 Annex로 첨부하고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절감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이번 전권회의에서 부분회원 분담금 단위 인상을 결정하려는 개도국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으며 특히 아르헨티나는 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반대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의장은 공개 거수를 통한 회원국들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1/4로 인상하고자 하는 회원국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전권회의이며 본 사항은 중요한 결정인 만큼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투표에 의한 결정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회원국 다수의 의견으로 확인됨에 따라 따라서 최종 논의결과 미국의 제안으로 이사회에서 관련 모든 이슈를 검토하고 차기 전권회의에서 검토하기로 결정 ITU-T 권고 무료 접속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ITU-T 권고 무료 제공시 발생하는 수입 감소분을 포함하여 수입 계정을 고려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ITU의 조직과 기능

전반적인 ITU 조직과 기능에 대한 아랍, RCC, 미주, 아프리카는 현재의 ITU 조직은 현재대로 유지하길 희망하며,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유럽은 현재의 ITU 구조 유지는 지지하나, 관련 연구가 추진될 경우 ITU의 구조가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ITU-D 기능 및 구조와 관련하여 아랍은 ITU 내의 기능 및 업무 중복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특히, 개도국의 전략 연구를 일반부서(특히, SPU)가 아닌 BDT에서 추진해야 됨을 강조하고, 호주는 전략이슈에 대한 연구는 일반부서(특히, SPU)에서 수행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BDT에서 이행을 추진하게 되는데, 전략이슈에 대한 정의가 논의되어야 하는지 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하여하였다. 한국은 기능의 중복은 최대한 피해야 하나, 개도국의 전략이슈에 대한 연구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관찰과 결과도출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는 BDT가 아닌 일반부서(SPU)에서 수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스위스, 영국, 일본, 미국, 노르웨이 등은 한국과 같이 현재의 구조에 대한 변경을 반대하였다. 특히 전략이슈와 관련하여서는, 스위스는 전략이슈에 대한 업무분장은 ITU 사무국내의 상호 협의에 의해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 상태를 지지하였고, 영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전략이슈에 대한 특정 부문으로의 이관은 타 부문에서도 동일하게 요청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가 바람직함을 지적하여 최종적으로 현재의 문제는 사무국내의 조정의 결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ITU의 전략연구는 일반부서(SPU)에서 지속적으로 추진기로 결정하였다.

다. 선출직의 역할 및 선출방법

선출직의 역할과 관련하여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무차장의 역할이 헌장과 협약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다. 그러나 방법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 108에 사무차장의 역할이 기술되어 있어 이를 헌정과 협약에 포함시키는 의견과 그 역할을 구체화하는 것이 기능과 권한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선출직 후보자들이 대부분 8년 이상 다른 선출직을 역임하여, 최장 16년의 선출직 수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ITU 선출직을 수행한 사람이 2번의 임기를 마친 후에는 더 이상 다른 선출직으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유럽 제안도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논의의 결과 선출직(RRB위원 포함) 재선출의 의미는 연속, 비연속에 상관없이 두 번째 임기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CV13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사무차장의 임무 및 기능에 관한 신규 결의 채택하였다.

라. 조정위원회

선출직 간의 협의와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유럽은 내부 운영 및 이 사회의 보고의 책임은 사무총장이 갖으며, 운영위원회는 내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공식적인 조직화로 처리함으로써 운영의 경직성을 가져오며 실질적인 조정의 역할을 해오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유럽은 공동 제안 통하여 사무국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며, 사무차장의 역할 구체화 등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 강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아랍과 아프리카는 사무차장의 역할 구체화가 필요하며, 조정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미국은 사무차장은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갖으며,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정위원회 회의록의 활용에 대해 회원국의 요구(on request)가 아닌 회의록의 무조건적 이용 가용성에 대한 아프리카 제안에 대하여 회원국의 지지로 채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아랍은 조정위원회 회의록이 이사국에 대한 공개(CV 111)가 아닌 모든 회원국에 공개 제안하여 채택되었다.

마. ITR(국제전기통신규칙)

마라케시 전권회의 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연구되었으나⁶⁾ 합의되지 못한

6) 마라케쉬에서 계속된 논의는 ITR에 대해 새로운 조항의 추가등 개정을 통하여 RR (radio regulation)의 수준의 국제법화하자는 개도국의 의견과, 이미 상업적인 arrange-

ITR에 대해서 2006 전권회의에서도 논의가 계속되었다. 아프리카, 아랍, RCC는 ITR은 개도국의 이해를 위하여 개정되어야 하며, RCC는 ITR을 전파규칙(RR)과 같이 WCIT가 아닌 표준화부문 내부에서 다룰 수 있도록 수준을 하향 조정 제안하였다. 미국은 ITR이 이미 사문화되었으며 추가적인 규정 검토에 반대하였으며, 유럽은 ITR의 점진적인 폐지를 목표로 ITU-T에서 논의하고 PP-10에서 향후 처리방안을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APT는 ITR에 대하여 ITU-T에서 사전연구를 추진하고, 현장/협약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규정과 ITU-T 권고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분리하고, PP-10에서 향후 처리방안을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회원국간의 심도있는 논의의 결과, ITR 관련 신규 결의 개발에 대한 참여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되어 기존 결의121과 결의79 폐지가 결의되었다. 신규결의는 ITR 결정에 대한 검토(review)를 결의하고, ITU-T는 ITR의 규정을 검토(필요시, 타 부문과의 협의를 추진하나, ITU-T 주도함)하도록 지시하였다. 2009년 개최되는 WTPF는 국제통신망 및 서비스에 관한 신규 통신정책 및 규제 이슈의 논의를 목적으로 하며, 적절한 의견을 개발해야 하며 WTPF는 필요한 보고서 및 의견을 개발하여, ITU 회원 및 이사회에서의 회원국과 부문회원의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2012년에 WCIT를 개최하여 검토과정에 나온 제안 사항을 검토하도록 결의하였다. 이사회에 대해서는 상기 보고서의 검토와, 2011년 회기에서 WCIT 의제 및 개최일정을 결정하도록 지시하였다.

바. 업저버

2002 마라케시 전권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업저버에 관한 검토 및 규정의 개정
에 대한 연구의 결과 채택된 ITU 컨퍼런스·총회·회의의 업저버 참여에 관한 신규

ment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ITU-T권고로의 이관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폐기하는 유럽등의 입장, 개정 혹은 폐기를 위한 WCIT개최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사실상 사문화하자는 미국등의 입장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사회의 ITR작업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러한 3개의 입장이 있다는 것만 최종 보고되었다.

결의는 업저버의 참여범위(이사회 또는 산하 작업반 등)에 대한 추가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저버의 정의에 대한 문구 합의 등이 이루어졌다.

사. WRC의 회의 개최주기

미국은 WRC의 회의개최 주기를 2~3년에서 4~5년으로 변경하고(CS90 수정) WRC와 RA의 연계 개최에 관한 조항(CS91)의 삭제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없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필요에 따라 융통성있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개최주기의 유연성의 한계를 논의하기 위하여 비공식 그룹을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 '2~3년'이란 조항을 '3~4'년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아. 분담금단위

금번 전권회의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줄어들어 따라 최종 분담금 단위(unit) 발표 시한을 회의 마지막 2번째 주중에 하도록 한 조항을 마지막 주 월요일(2006.11.20)로 하도록 헌장28조 161E를 개정하도록 이견 없이 승인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부문회원은 3개월 내(늦어도 2007년 2월 24)에 발표하도록 결정하였다. 회원국들의 분담금 서약과정에서 스위스, 덴마크를 비롯한 7개 국가는 기부금 단위 삭감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3개 국가는 증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분담금 단위를 변경하지 않았다. 이러한 서약의 결과로 따라서 차기 4년 회기 동안 6/8 분담금 단위 감소(8.1M CHF)가 예상된다.

1단위 분담금 금액(value)을 결정하는 방법은 2002년 전권회의와 마찬가지로 2008~2009년의 1단위 기부금 금액은 금번 회의에서 결정하고 2010~2011년 분담금 금액에 대해서는 상한금만 결정하고 최종 결정은 2009년도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사무국은 지난 10년간 분담금 단위액은 334,000 CHF에서 318,000 CHF로 감소하였으며 2006년 1월 기준으로 실질가치로 약 14%가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현재 상황에서 분담금 단위액 318,000 CHF와 부문회원 분담금의 1/5비율을 유지할 경우 추정 수입은 628.9M CHF으로 총 비용의 5%에 해당하는 총 33.3M CHF의 부

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사무국은 분담금 단위의 손익분기점은 단위액 CHF 338,500에 부문회원의 분담금 비율이 1/4로 제시하였다.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분담금 부담이 많은 국가들은 분담금 상한액 318,000CHF를 지지하였으며, 사무국이 제안한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ITU 재정은 위험 수준은 아니며 ITU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재정계획 작성 및 예산 배분이 되어야 하며 주요 회의 기간을 줄이거나, 직원 교육 및 인사 재배치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하였다. 반면 이라크 및 가봉 등 아랍지역, 아프리카지역 등 개도국은 기존의 이니셔티브들이나 사업들이 재정부족으로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들어 분담금 단위액의 증액이나 부문회원 분담금 비율의 확대를 통한 예산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이견이 첨예하였으나, 논의 결과 2008~2009년도 분담금 단위 금액 318,000CHF로 하기로 하고, 2010~2011년 분담금 단위 금액의 상한을 330,000CHF으로 결정하고 2009년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토록 하였다.

러시아는 예산증대의 맥락에서 각 회원국의 기부금 단위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유연성을 높이는 제안을 하였으며, 지지의견과 함께 기부금 unit이 너무 세분될 경우 사무국에 많은 부담이 된다는 회원국의 의견이 있었다. 논의 결과 기부금 5, 8 사이에 6을, 10과 13 사이에 11 단위를 추가하여 회원국들이 기부금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주도록 하였으며, 법률 자문 결과 이번 회의에서 협약을 개정하고, 2008년 1월부터 새로운 unit이 적용되도록 결정하였다.

자. 연체 및 특별 연체 계좌

캐나다는 연체 및 특별 연체 계좌와 관련된 재정규칙에 관해 검토한 문서(11.4 이사회 최종안 작성)를 통해 선진국, 개발도상국, 극빈국 등 국가의 상황에 따라 연체 청산 시한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제안과 연체 부문회원에 대해서 엄격한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제안하였다. 연체 및 특별 연체 계좌와 관련된 재정규칙(Article 29)의 가이드라인 구성은 이사회의 임무이며, EU 규정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이슈를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제안하였다.

연체청산과 관련하여서는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합의되었으나 각 범주별 청산기간에 대한 논의 결과, 연체 상환 기한을 선진국은 최대 5년, 개도국 10년, 최저개도국은 15년으로 부분회원 및 준회원은 5년으로 결정하고 본 내용을 포함하여 연체금 청산 스케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합의된 대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이사회에 지시하였다.

차. 2008~2011년 전략계획

이사회 작업반을 통해 마련된 2008~2011년 전략계획(안)(결의71)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특히 전략·재정·운영계획 및 WSIS 이행에 대한 연계가 강조되었다. 아랍 그룹 및 아프리카 그룹이 통신 규제자들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ITU의 공식 행사로 지정하여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며 본 내용을 전략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은 유보(reservation)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대하였다. 러시아는 WTDC 2006에서 telecommunication의 정의를 telecommunication/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로 변경하였기에 전략계획에서 이를 수용하여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가봉, 독일, 미국은 전략계획은 상위 계획으로 러시아의 제안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운영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잠바브웨이, 가봉, 태국은 논리적으로 KPI(Key Project Indicator)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정의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annex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면 캐나다는 전략, 재정, 운영 계획의 연계가 KPI의 중요 개념이며 관련 문구를 확인하여, 포함할 것 제안하여 채택되었다.

카. ITU TELECOM

유럽지역은 World 및 Regional 텔레콤을 Global TELECOM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ITU 텔레콤 장소 선정 및 ITU 텔레콤 board 구성원의 자격을 이사회가 승인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프리카, 아랍 지역은 현행 세계 및 지

역 텔레콤을 현행대로 독립적으로 개최하되 텔레콤 운영의 효율 증대를 위한 메카니즘 도입을 제안하였다. 아시아는 World 및 Regional 텔레콤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투명성, 효율성 증대 및 재정적 자생성 강화(financial viability)를 위한 방안을 연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World 및 Regional 텔레콤을 현행 주기대로 독립적으로 개최하는 점, 지역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개최 지역 순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지역간 입장 차이를 보였다.

스위스, 노르웨이는 ITU 텔레콤은 ITU 재정의 중요한 수입원으로서 텔레콤 수입은 ITU-D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만큼 수익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으며, 텔레콤 장소 선정은 시장상황 및 타당성연구(market and feasibility study)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회원국에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이집트 등 아랍, 아프리카 지역은 World 텔레콤은 중요한 행사로 개최 국가 뿐 아니라 개최 지역의 시장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수익성보다 지역 순환 원칙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논의 결과 World 및 Regional 텔레콤을 현행 주기대로 독립적으로 개최하고 World Telecom 장소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기반으로 하되 동등한 타당성(equally viable bids)이 입증되었을 경우 지역 순환 원칙을 적용토록 하였다.

다. 지역사무소

금번 전권회의에서는 지역 사무소 평가를 수행하고, ITU-D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와 협조하고, 지역 이니셔티브를 돕기 위한 피드백을 회원국에 제공하고, ITU 지역 사무소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BDT를 통해 회원국에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 사무소간 동등한 자원이 배분되도록 이사회에 지시하고 또한 ITU 지역 사무소를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지역 사무소 평가 주체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하지 못하였다. 독일은 이사회 임무가 많기 때문에 지역사무소 평가 업무를 사무총장에 지시하되 평가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 방안으로 UN 기관의 합동감사국 (JIU: joint inspection unit)의 프로그램

램을 통해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은 독일의 제안에 동의하며 이미 ITU가 JIU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ITU 사무국에 더 많은 업무 부담을 주는 것 보다는 JIU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캐나다, 이집트는 JIU(joint inspection unit)가 평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지역사무소 평가는 독립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고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논의 결과 지역 사무소간 동등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기구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회원국의 이익을 위해 최대 노력하고 UN의 연합감시기구(Joint Inspection Unit) 또는 타 독립기관을 통해 지역 기구를 평가하기로 하였다.

파. 회의일정

향후 4년간의 ITU의 주요 일정이 2010년에 집중되어 있어 ITU에 재정적, 운영적 인 면에서 부담이 되므로 이에 사무국은 WTDC를 2009년(11월말)에 개최할 것이 제안되었다. 유럽지역은 향후 전권회의는 4월~6월 사이에 개최하고 이사회를 4/4 분기에 개최하여 금번 전권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멕시코는 2010년 전권회의 유치 의사를 밝히고 2010년 전권회의는 예정대로 10월~11월에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은 2010년 3개의 ITU 주요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하므로 한 해에 1개의 World 회의만 개최되도록 전권회의 개최 주기를 6년으로 할 것을 제안, 또한 회의 일정에 대한 검토는 재정계획의 논의 이후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하게 요청하였다.

스페인, 노르웨이, 프랑스, 스위스, 뉴질랜드 등 회원국 대부분은 전권회의는 4년마다 개최되어야 하며 6년마다 개최될 경우 선출직 선거 문제에 대한 검토 및 3주간 일정 회의 일정은 연장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WRC는 전파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유일한 회의로 5년 마다 개최된다면 적기에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므로 현행 주기대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하였다. 캐나다는 WRC 회의 주기를 검토하기 전에 WRC 의제를 좀더 조정(manageable)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중국은 중재안으로 전권회의를 4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

였으나 WRC 개최 주기 변경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논의 결과 전권회의는 1/4분기에, 이사회는 4/4분기에 개최하고 가능한 세계 회의 (Conference 또는 Assembly)가 한 해에 동시에 개최되지 않도록 전권회의의 개최 주기 및 기간에 대해 이사회에 검토하고 차기 전권회의에 보고토록 지시하였다.

하. 결과 기반 관리(RBM: Results-based Management)

재정규칙 작업반 의장은 재정안정성 및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수입 및 지출의 연례검토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현재 분기별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상세내역을 이사회에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공공부문 회계표준이 연례 회계 보고서 작성을 명기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매년 수입과 비용과 관련된 수치를 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환기시켰다. 캐나다는 운영이 효과성, 효율성 및 경제성의 개선이라는 면에서 RBB(Results-based Budget)의 다음 단계로 RBM(Results-based Management)의 이행이 순리임을 강조하고 UN시스템 전반에 걸쳐 운영의 개선의 성과가 있었으며 계획수립, 프로그램, 권한 및 책임위임, 직원업무성과 관리 및 계약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RBM에 관한 IAP의 보고서가 2004년에 발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은 결함예산 안에는 RBB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이는 예산작성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ITU내의 서비스 및 활동이 총비용을 결정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인도네시아는 zero nominal growth 혹은 minus real growth는 결과적으로 ITU의 목표 달성에 위협이 될 것이며 이는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RBB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절차를 통해 조화롭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논의 결과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결과기반예산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신규 결의를 채택하였다.

거. MBG(Management and Budget Group)

2006년 이사회에서 NCOG의 임무를 다음 회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NCOG

(New Council Oversight Group)을 MBG(Management and Budget Group of Council)로 변경하는 신규 결의(안) 제안하였다. MBG는 전략, 운영계획이행, 2년간 예산 및 이사회 결정, 이사회 결의 1243 및 RBM 프로젝트 이행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NCOG의 경험을 바탕으로 PP직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MBG 구성 및 작업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및 우선순위, 목적 및 이행방법 등에 관련하여 사무총장 및 회원국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하고 관련 프로젝트의 이행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캐나다는 Key Performance Indicators(KPI) 결과분석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러시아는 MBG의 목표가 ITU의 재정을 강화하고 작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임을 환기시켰다. MBG의 구성 및 작업방법에 대해서는 전권회의 마지막날(11월 24일) 개최되는 추가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추가 이사회에서는 캐나다에 의해 선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관리팀이 구성된 후에 MBG의 구성, 작업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구성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정보 공유를 위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제안하였다. 독일은 캐나다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며 MBG의 업무 효율성 효과성을 위해서는 NCOG과 마찬가지로 구성을 제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피력하였다. 일본은 모든 회원국에 공개하되, 부의장을 10명으로 구성하여 효과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MBG 구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2007년도 5월 임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너. ITU 활동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스위스와 아르헨티나는 ITU 활동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작업반 구성 및 시험 프로그램(pilot-program)을 수행할 것을 신규결의로 제안하였다. 튀니지, 모로코, 프랑스, 세네갈 등은 ITU의 정보격차해소활동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시민사회의 참여강화를 논의할 작업반에 회원국 뿐 아니라 부문회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반면 시리아, 중국, 미국, 이란 등은 작업반에는 회원국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논의결과 회원국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역할 강화를 연구하기 위한 이사회 작업반 구성에 대한 신규결의가 승인되었다.

더. 인터넷 자원 관리

아랍그룹은 ITU가 도메인네임 및 주소관리와 관련된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결의102을 수정하였으며 EU는 결의133의 국제 도메인네임관리와 관련된 회원국의 역할을 결의102에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 호주는 결의102은 현재도 충분히 광범위하고 적합하므로 그대로 둘 것과 결의133을 WSIS 결과를 반영하여 단독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결의102의 검토시 1) internet resources including domain names and addresses, 2) internet domain names and addresses, 3) internet resources 중 어느 용어를 문서 전체에 걸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미국, 캐나다는 3)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ITU의 역할이 명확할 필요가 있으므로 2)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네덜란드는 기존 제목인 1)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우디, 이란, 남아프리카는 개도국은 인터넷 자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넓은 범위인 3)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의장이 internet domain names and addresses and other internet resources within the mandate of ITU를 제시하였으며, 미국, 사우디, 영국 등이 동의하여 결의102의 수정본이 승인되었다. 또한 미국의 제안대로 결의 102와의 통합 없이 결의133에 대한 수정안이 논의된 후, 비라틴 문자의 사용으로 도메인네임을 확대하여 국제적인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를 증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결의133에 대한 수정안이 승인되었다.

러.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보안에서 ITU의 역할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보안에서 ITU의 역할을 정의하는 결의130에 대한 수정안이 러시아, 영국, 미국, 시리아 등의 주도로 논의되었으며 1)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security, 2) information security and network security, 3) telecommunication network security, 4) building confidence and security in the use of ICT의 4가지 용어 중 어느 것을 문서 전체에서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다. 러시아, 중국은 영국의 제안인 4)번은 의미가 광범위해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network security는 network를 통해 전달되는 information secu-

urity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2)번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시리아는 content security를 취급하는 기관은 UNESCO이며 ITU는 기술적 security 이슈를 다룬다고 지적하고 resolves 부분에서는 ITU의 역할이 명확해야 하므로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고 다른 부분은 영국이 제안한 building confidence and security in the use of ICTs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은 ITU는 ICT 인프라의 보안을 다루고 있으며 정보의 보안은 UNESCO의 역할을 지적하고 문서 전체에서 기존 타이틀인 1)이나 4)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 러시아, 중국, 시리아 등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여 영국의 제안대로 buliding confidence and security in the use of ICTs를 사용하고, security 용어사용에 대한 연구도 ITU 현장 및 협약에 사용되는 용어 연구 작업반에서 함께 연구하기로 하였다.

머. ITU 명칭 및 역할

정보통신의 개념의 변화와 범위의 확대, ITU의 역할을 변화등을 고려하여 ITU의 명칭을 개정하고, 이에 준하여 ITU의 역할을 개정,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미국, EU 등은 ITU현장 및 협약 상 역할이 충분히 광범위하므로 그대로 유지하고 명칭 역시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러시아, 아랍그룹 등은 현재 ITU현장 및 협약 상의 역할이 WSIS에서 정의된 ITU의 역할보다 좁다고 주장하고 명칭과 역할의 개정을 요청하였다. 케냐, 인도, 호주 등은 ITU의 역할이 산업변화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나 ITU의 명칭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가치 있는 것이므로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논의결과 시리아, 러시아 등이 ITU명칭을 유지하는데는 동의하였으나 WSIS와 관련된 ITU의 활동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 및 협약을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미국, 영국, 독일 등은 ITU현장 및 협약의 변경 전에 information technology, 시민사회 등과 같은 용어의 연구가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현 시점에서 현장 및 협약 수정에 반대하였다.

의장이 ITU의 현장 및 협약에 나오는 용어들을 연구하기 위한 작업반 구성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논의결과 ITU 현장 및 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검토를 위해 이사회 작업반을 구성할 것과 이 결과를 다음 전권회의에 반영할 것을 내용으

로 하는 신규결의가 승인되었다.

버. WSIS 결과수행에서 ITU의 역할

WSIS 결과수행에서 ITU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미국, EU, 아시아그룹에서 기고서를 제출하였고, 아랍그룹은 정보격차해소를 다루는 결의129이 결의31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통합하고 결의31을 삭제할 것 제안하였다. 미국이 multistakeholder approach가 ITU헌장 및 협약에 명시된 것이 아니므로 명확하지 않다고 반대하여 시리아의 제안대로 partnership을 대신 사용하기로 하였다. 논의결과 결의31과 결의129를 통합하여 정보기회촉진 및 정보사회구축을 위한 통신/ICT에 대한 신규결의와, WSIS 결과수행에서의 ITU의 역할이라는 신규결의가 작성 및 승인되었다.

서. 재난 경고 및 복구를 위한 통신서비스 제공

EU, 아시아그룹은 Tempere convention에의 적극적 참여 등을 통해 재난극복을 위한 통신서비스를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36을 업데이트할 것을 제안하였다. 멕시코는 모든 국가가 Tempere convention에 비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지적하고 이 내용을 제외하고 결의36을 지지를 밝힘에 따라 결의36의 수정안이 승인되었다. 캐나다는 미국의 재난경고 및 복구를 위한 통신기술 활용에 대한 신규결의를 결의36에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미국이 이에 동의하였으나 시리아는 결의36은 Tempere convention에 대한 내용이며 미국결의는 운용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두 결의의 통합에 반대함에 따라 결의36에 대한 수정안과 미국의 신규결의를 독립적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신규결의 내용중 민간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부문을 개도국의 경우 재난 복구 및 경고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정부활동에 기여하는 역할로 수정키로 하여 신규결의가 승인되었다.

어. 커뮤니티 접근성 지표

아랍그룹이 지역사회 단위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결의131을 수정하여 정보통신기회지수(ICT OI)를 ITU 단일 지수로 인정하고자 하는

기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멕시코와 미국은 기존 PP-02 결의 131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고문을 제출하였다. 한국은 WSIS에서 정보화 측정을 위한 지표로 정보통신 기회지수(ICT OI)와 디지털기회지수(DOI)가 함께 지정되었음을 강조하고 통합본에 ICT OI와 함께 DOI를 포함하던지, 아니면 두 용어 모두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랍은 ITU가 2개의 지표를 다룰 능력과 재원이 없음을 지적하고 단일 지표의 개발을 위해 BDT가 개발한 ICT OI에 집중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한국은 SPU가 개발한 DOI와 ICT OI의 장단점을 연구한 후 하나에 집중하고 하나가 선택되기 전에는 두 지표에 동일한 무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논의결과 ICT OI를 an ICT index (single index)로 대체하기로 하여 결의131의 수정안이 승인되었다.

저. 제4차 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

시리아는 1~3차회의 개최후, 8년간 개최되지 않았던 전기통신정책포럼(World Telecommunications Policy Forum)⁷⁾을 2008년 4분기 또는 2009년 1분기에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신규결정 제안하였으며, 미국은 개최시기와 관련하여 WTDC 등 ITU 행사 시기가 Com5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2009년 1분기 개최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논의결과 2009년 1분기 개최가 동의되어 신규결정이 승인되었다.

3. 선 거

2006년 안탈라 전권회의의에서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각부문 국장 등 총 5명의

7) 제1차 WTPF(1996)은 GMPCS(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s by Satellite)을 주제로 개최되어 129 개국 1061명 참가하였으며, 결과물로 5개의 opinions, GMPCS Guideline, GMPCS, MoU이 도출되었다. 제2차 WTPF(1998)은 Trade in telecommunications라는 주제로 통신 분야에, 비차별적 시장접근,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 요금 수립 규제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포함한 무역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였으며, 119개국에서 700명 참가하였고, 3개의 opinion이 도출되었다. 제3차 WTPF(2001)은 IP Telephony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125개국에서 750명 참가하여 4개의 Opinions이 도출되었다.

선출직선거, RRB 위원 선거, 이사국 선거 등이 이루어졌다. ITU 총회원국 191개국 중 연체등으로 인하여 투표권을 상실한 17개국과 회의, 혹은 투표에 불참한 국가를 제외한 총 투표국 수를 기준으로 하여 선거 결과가 판정되었다.

ITU 사무총장에는 현 사무차장인 브라질의 브루아와 개발국장인 말리의 뚜레를 포함하여 6인의 후보가 입후보하였으며, 3차에 걸친 선거 결과 말리의 뚜레가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사무차장의 터키, 스페인, 중국이 입후보하였으며 현 표준화 국장이 중국의 짜오가 1차 선거에서 선출되었다.

〈표 2-5〉 PP-06 ITU 사무총장 선거 결과

| 후 보 | | 1차 (11. 9, 오전) | 2차 (11. 9, 오후) | 3차 (11. 10, 오전) | 당선자 |
|--------------------|-------------------|-------------------|-------------------|--------------------|---------------|
| Region A (미주) | 브라질 (Mr.브루아) | 29 | 24 | (사퇴) | 말리 (Mr.뚜레) |
| Region B (서유럽) | 독일 (Mr.크루트) | 45 | 51 | 60 | |
| | 스위스 (Mr.푸레) | 14 | 9 | (사퇴) | |
| Region D (아프리카) | 튀니지 (Mr.오와일리) | 9 | (사퇴) | — | |
| | 말리 (Mr.뚜레) | 53 | 72 | 95 | |
| Region E (아시아) | 요르단 (Ms.무나니젠펜) | 5 | (사퇴) | — | |

〈표 2-6〉 PP-06 ITU 사무차장 선거 결과

| 후보 | | 1차(11.10, 오후) | 당선자 |
|-------------------|-------------|---------------|-----------|
| Region B (서유럽) | 터키(Mr.베이도간) | 28 | 중국(Mr.짜오) |
| | 스페인(Mr.산체스) | 34 | |
| Region E (아시아) | 중국(Mr.짜오) | 93 | |

부문별 국장의 선거는 연임을 한 전파국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3차까지 가는 선거를 치루었으며, 최종적으로 표준화국장은 영국의 존슨, 개발국장은 사우디의 알바쉐리가 당선되었다.

〈표 2-7〉 PP-06 ITU BR국장 선거 결과

| 후 보 | | | 1차 (11. 13, 오후) | 2차 (11. 14, 오전) | 3차 (11. 14, 오후) | 당선자 |
|-----|--------------------|------------------|--------------------|--------------------|--------------------|------------------|
| BR | Region C (동유럽) | 러시아 (Mr.티모페브) | 158 | — | — | 러시아 (Mr.티모페브) |
| TSB | Region B (서유럽) | 이탈리아 (Mr.비지) | 15 | (사퇴) | — | 영국 (Mr.존슨) |
| | | 영국 (Mr.존슨) | 46 | 60 | 83 | |
| | Region E (아시아) | 한국 (박기식 박사) | 39 | 35 | (사퇴) | |
| | | 일본 (Mr.이노우에) | 59 | 64 | 79 | |
| BDT | Region D (아프리카) | 알제리 (Mr.부싸이드) | 25 | (사퇴) | — | 사우디 (Mr.알바쉐리) |
| | | 우간다 (Mr.마삼부) | 49 | 58 | 70 | |
| | | 모로코 (Mr.모치드) | 39 | 33 | (사퇴) | |
| | Region E (아시아) | 사우디 (Mr.알바쉐리) | 47 | 63 | 91 | |

RRB위원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8〉 PP-06 ITU RRB 위원 선거 결과

| Region A(미주) [2석] | Region B (서유럽)[2석] | Region C (동유럽)[2석] | Region D (아프리카)[3석] | Region E (아시아)[3석] |
|----------------------|-----------------------|-----------------------|------------------------|-----------------------|
| 미국 (Ms.졸러) | 리투아니아 (Mr.질린스카스) | 폴란드 (Mr.모론) | 모로코 (Mr.레바디) | 말레이시아 (Mr.에바디) |
| 122 | 154 | 193 | 154 | 117 |

| Region A(미주) [2석] | Region B (서유럽)[2석] | Region C (동유럽)[2석] | Region D (아프리카)[3석] | Region E (아시아)[3석] |
|----------------------|-----------------------|-----------------------|------------------------|-----------------------|
| 캐나다 (Mr. 존스) | 프랑스 (Mr. 리모탱) | 키르기스스탄 (Mr. 누마토브) | 나이지리아 (Mr. 테일러) | 파키스탄 (Mr. 말릭) |
| 94 | 151 | 122 | 154 | 110 |
| 베네주엘라 (Mr. 마시글리아) | | 세르비아 (Mr. 시딕) | 카메룬 (Mr. 줘름바) | 인도 (Mr. 가르그) |
| 60 | | 92 | 151 | 103 |
| 혼두라스(Mr. 제페다베뮤데즈) | | | | 이란 (Mr. 샤피에) |
| 34 | | | | 72 |
| | | | | 뉴질랜드 (Mr. 허친슨) |
| | | | | 67 |

ITU이사국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한국은 5선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표 2-9〉 PP-06 ITU 이사국 선거 결과

| Region A: 8 | Region B: 8 | Region C: 5 | Region D: 13 | Region E:12 |
|-------------|-------------|-------------|--------------|-------------|
| 아르헨티나 | 프랑스 | 아제르바이젠 | 알제리 | 호주 |
| 129 | 140 | 57 | 115 | 106 |
| 브라질 | 독일 | 불가리아 | 브루키나파소 | 중국 |
| 143 | 132 | 99 | 103 | 132 |
| 캐나다 | 이탈리아 | 체코 | 브룬디 | 인도 |
| 124 | 123 | 96 | 52 | 113 |
| 쿠바 | 포르투갈 | 카자흐스탄 | 카메룬 | 인도네시아 |
| 115 | 121 | 74 | 95 | 118 |
| 도미니카공화국 | 스페인 | 폴란드 | 이집트 | 이란 |
| 91 | 134 | 94 | 111 | 72 |
| 에콰도르 | 스웨덴 | 루마니아 | 가봉 | 일본 |
| 62 | 132 | 102 | 48 | 140 |
| 엘살바도르 | 스위스 | 러시아 | 가나 | 한국 |
| 77 | 133 | 135 | 107 | 133 |

| Region A: 8 | Region B: 8 | Region C: 5 | Region D: 13 | Region E:12 |
|-------------|-------------|---|--------------|-------------|
| 멕시코 | 터키 | 우크라이나 | 케냐 | 쿠웨이트 |
| 131 | 120 | 94 | 97 | 97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영국 | ○ 폴란드 및 우크라이나 동수로 2차 투표 진행 (11. 17 실시) ○ 2차 투표 결과 우크라이나가 77표로 선정 | 말리 | 레바논 |
| 103 | 115 | | 113 | 91 |
| 미국 | | | 모로코 | 말레이시아 |
| 128 | | | 117 | 122 |
| 베네주엘라 | | | 나이지리아 | 파키스탄 |
| 100 | | | 114 | 117 |
| | | | 르완다 | 필리핀 |
| | | | 59 | 113 |
| | | | 세네갈 | 사우디 |
| | | | 117 | 110 |
| | | | 남아공 | 태국 |
| | | | 112 | 125 |
| | | | 수단 | UAE |
| | | | 63 | 119 |
| | | | 탄자니아 | 베트남 |
| | | | 97 | 91 |
| | | 튀니지 | | |
| | | 113 | | |
| | | 우간다 | | |
| | | 93 | | |
| | | 잠비아 | | |
| | | 56 | | |
| | | 코트디부아르 | | |
| | | 62 | | |

다음은 2007~2010년 이사국으로 선출된 46개국이다.

〈표 2-10〉 2007~2010 ITU 이사국

| Region A [8석] | Region B [8석] | Region C [5석] | Region D [13석] | Region E [12석] |
|---|--|------------------------------------|--|---|
|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쿠바 멕시코 트리니다도토바고 미국 베네수엘라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 알제리 브루키나파소 카메룬 이집트 가나 케냐 말리 모로코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공 탄자니아 튀니지 | 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사우디 태국 UAE |

제 3 절 2006년도 전권회의의 성과와 정책적 함의

1. 2006년도 전권회의의 주요 성과

2006전권회의는 새로운 운영진을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비전과 경영철학을 가지고 향후 4년 길게는 8년간 운영되게 되었다. 신임 뚜레 사무총장은 이번 전권회의가 ITU의 업무를 제고하기 위한 많은 가능성을 열고, 정보통신과 ICT관련 선도적인 UN 전문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재확인하는 성공적인 회의였다고 평가하였다. 신임사무총장은 ICT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포함한 모든 곳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최신기술을 사용하고, IT 산업의 발전을 육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ICT를 다루는 민간부문과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모든 당사자들(stakeholders)의 의미있는 참여를 통하여 디지털 미래로의 발전을 추진하겠다고(Build bridges to a digital future)라고 하였다. 또한 인터넷 가버넌스에 관련하여서는 이미 ITU는 표준화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인터넷과 관련된 국제 공공정책(International

Public Policy)문제에 참여할 것이나, 인터넷 가버넌스를 빼앗아 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인터넷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사무총장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ITU는 ICT의 발전에 따라 요구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당사자들의 참여와 다양한 새로운 이슈에 대한 ITU의 역할과 기여를 증대하여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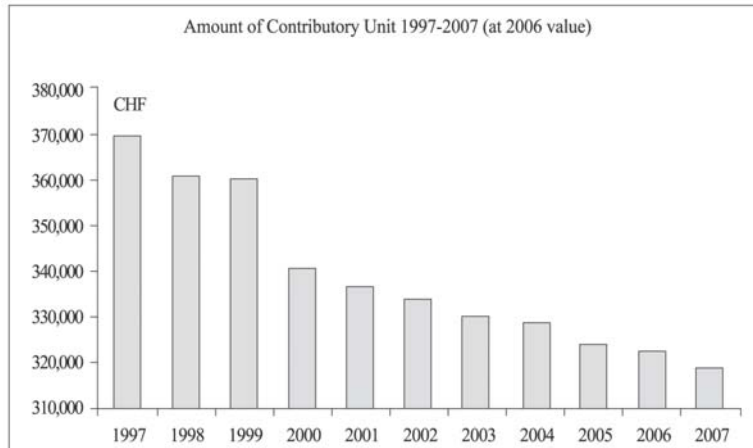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주요 결정 및 논의 중에서 ITU의 재정 및 개혁을 위한 논의 및 결정은 ITU의 향후 행동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가. 재정

2006 전권회의에서는 2008~2011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회원들이 분담금단위를 서약하는 재정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2002년 마라케시 전권회의시부터 강력한 효율화 조치를 포함한 과감한 비용 절감을 수행하여 왔으며 2008~2009에도 추가적인 조치가 이행될 예정이나 추가 비용절감의 여지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현재의 ITU의 재정 상호아이라고 할 수 있다. ITU의 총 수입 중 79%가 분담금이며 분담금 수입 중 85%가 회원국 분담금으로 ITU의 총 예상 상수입에서의 회원국 분담금 비중도 66.4%에 달하고 있다.⁸⁾ 현재의 구조상에서 ITU의 비용을 적극적으로 절감하거나, 수입을 증대할 방안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비용 구조자체가 대부분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용(예산의 82%)이고 그 외의 비용도 차용액의 반환금 등 줄일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또 분담금 수입의 경우도 회원국 분담금은 금융위기 시 격감했다가, 약간 회복한 상태이나 지난 10년을 살펴볼 때, 6%가 감소된 상황이다. 부문회원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10년간 18%의 분담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8) ITU의 분담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5단위이상 분담금을 내는 20개국이 ITU총 분담금 수입의 80%가깝게 점하고 있는 상황임

(그림 2-1) ITU 기여금 단위 증가 흐름



그러나 WSIS 결과의 이행과 ICT환경변화에 따른도전등 ITU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통신방송 융합의 추세는 ITU의 임무를 확대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재정계획의 논의과정은 ITU가 요구되고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분담금 단위액을 높이고, 부문회원의 분담금 담위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무국과 개발도상국과 효율적인 운영 및 비용절감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ITU재정의 실무담당자인 선진국의 입장이 충돌하였으며, 관련논의는 다음 전권회의까지 계속될 것으로 간주된다.

나. 개혁 및 새로운 모색

ITU의 개혁은 1992년 추가전권회의에서 ITU구조의 전반적인 개편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혁의 요구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 전권회의에서 개혁의 방향 및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결의를 채택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이를 이행하였으며, ITU-2000 Group이나 WGR(Working Group on Reform)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02년 전권회의 이후에는 구체적인 개혁아이템의 이행 감독을 포함한 COG(Council Oversight Group), NCOG(New Council Oversight Group)이 구성되었으며, 2006

전권회의에서도 이를 확대한 MBG(Management and Budget Group)이 구성되었다. 동 그룹은 ITU-2000 Group이나 WGR처럼 개혁을 위한 권고를 도출하기 보다는 상시적으로 사무총장이 ITU의 관리와 운영을 효율화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고 자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년1회의 이사회 개최를 ITU의 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특히 현재 ITU의 가장 중요한 당면현안 중의 하나인 재정과 예산수립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을 위한 논의의 지속과 함께 WSIS이후의 ITU의 임무 및 역할의 변화와 관련하여 ITU의 활동범위와 임무를 확대하거나, ITU의 명칭을 바꾸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특히 개도국들은 WSIS결과를 이행하기 위하여 ITU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 반면 다른 국가들은 현재의 ITU의 임무가 변화하는 IT환경을 충분히 수용할 만큼 광범위하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ITU의 명칭 변경도 동일한 맥락에서 ITU의 이름에 Telecommunication이 아닌 infocommunication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구체적으로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Union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으며, 현장상에서도 관련 된 용어의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견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ITU의 브랜드네임으로서의 가치가 중요한가, 아니면 개혁의 방향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가하는 원칙적인 논란으로 이어졌지만, 그 근거에는 ITU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WSIS의 연장선상에서 정부간 국제기구인 ITU의 민간부문 특히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한 논의도 제기되었고 이는 지속적으로 검토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ITU의 구조와 관련하여 현재의 연방제적인 구조와 선출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제기되기도 하였다. 유럽 그룹이 주축이 된 이 논의에서는 현재의 방식이 아닌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만 현재의 방식으로 선출하고, 각 부문 국장은 지명하는 방식을 제기하였는데,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은 지역적 형평성등의 문제를 들어 현재의 구조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 역시 차기 전권회의시까지 지속적으로 검토 논의될 것이다.

또한 이번 전권회의에서는 각 지역별 준비과정을 거쳐 지역 공동제안이 제출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사전논의를 통해 심도있는 제안이 나오는 동시에 지역별 이해관계의 충돌로 논란이 가속되는 등 장단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2. 우리나라의 주요 활동 및 성과

가. ITU 선거: 5선 이사국 달성 및 ITU 표준화부문(ITU-T) 국장 후보 배출

한국은 1989년 전권회의에서 ITU 이사국 회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래 5번째 연속 진출함으로써, 정보통신 강국의 위상을 세계에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한국의 발전수준 및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반영한 것이며, 그간의 이사국으로의 활동에 대한 높은 평가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1952년 ITU를 가입한 이래 처음으로 ITU 선출직인 표준화국장에 ETRI의 박기식 박사가 입후보하여 선거활동을 펼쳤으며, 타 후보에 비해 늦은 선거활동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 및 남미권의 지지를 확보하는 등 매우 전향적인 예측인 가능한 상태에서 전권회의 및 선거에 임하였다. 그러나, ITU 신임 사무총장이 지역 D(아프리카, Mr. 뚜레)로, 사무차장이 지역E(아시아, Mr. 짜오)로 배정됨에 따라,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지역B(서유럽)가 결속하는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아국이 후보를 낸 TSB 국장직에 지역B(영국, Mr. 존슨)가 당선되고, 아국은 아쉬운 3위를 달성하였다. 금번 TSB 국장 진출 시도는 한국의 기술뿐만 아니라 인력의 국제화를 시도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으며, 관련 선거 경험은 향후 국제기구의 선출직 진출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국제 전문인력 육성의 필요성등의 교훈을 얻었다.

나. 디지털 기회지수(DOI)

아랍그룹은 ITU가 2개의 지표운용을 위한 자원과 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단일지표의 개발을 위해 BDT가 개발한 ICT Opportunity Index(OI)에 집중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그 근거로 ITU 신임 사무총장(Mr. 뚜레)이 BDT가 향후 통계 및 지표개

발을 주도할 것임을 밝혔음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이미 ITU에 대한 기여를 통해 디지털기회지수(Digital Opportunity Index)를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이미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논의에 앞서 심도 있는 논의와 사전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ITU의 재원절감을 위한 지표의 통합은 찬성하나, 이를 위한 양 지표 간의 장단점 분석 등 사전연구가 회원국의 협의를 거쳐 선행되어야 하며, DOI가 결의131에 ICT OI와 동등하게 삽입되거나, 모든 지표의 명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결의131에 ICT OI를 삭제하고 대신 정보통신지표(ICT Index)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반영하였다. 한국은 Index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주도국으로서 동 논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앞으로도 BDT 중심으로 추진 예정인 향후 단일지표 개발 논의에 대한 아국의 적의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였다.

다. 위성망 등록비용 관련 결의 86 유지

결의 86은 WRC에서 위성망 국제등록과 관련된 여러 절차를 검토하고 개선토록 하였으며, 미국과 아랍 지역은 향후 WRC에서 결의 86의 본질과 어긋난 이슈들이 과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본 결의의 삭제를 제안하였다. 한국 및 아/태지역 14개국은 동 결의안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WRC-03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비정지 위성망을 동 결의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논의 결과 WRC-07이 종료된 후 본 결의와 관련된 성과를 분석하고, 차기 전권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라. BDT의 권한집중 저지

BDT 출신이 신임 사무총장이 됨으로써, 많은 권한이 BDT로 이관되기를 아랍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다수의 제안이 상정되었다. 아랍 및 아프리카는 개도국의 전략 연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직속 부서인 일반부서(특히, SPU)가 아닌 BDT가 수행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한국은 기능의 중복은 최대한 피해야 하나, 개도국의 전략이슈에 대한 연구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관찰과 결과도출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는 BDT가 아닌 일반부서(SPU)에서 수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여 채택되었다.

마. APT 공동기고에 대한 Coordinator 역할 수행

한국은 WTSA간 임무를 대리 수행하는 TSAG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PP-02 결의 122에 TSAG의 역할을 명료화할 것을 APT 공동제안으로 제출하였다. 아랍은 TSAG이 타 부문 자문반에 비해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국이 Coordinator로서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중재를 하였으며, 역할 강화를 명료화하되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권한 집행이라는 절충안을 도출하였다.

제 3 장 2007년 ITU 이사회 주요 논의

제 1 절 ITU 이사회 개관

1947년 전권회의에서 운영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된 ITU이사회는 전권회의의 휴회기간 동안에 전권회의의가 위임한 권한 내에서 전권회의의를 대신하여 연합의 관리단체로 행동한다(ITU헌장 제10조 3항). 이사회는 연합의 정책과 전략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전기통신환경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전권회의의가 제시하는 지침에 일치되도록 광범위한 전기통신 정책의 쟁점을 검토하고 연합을 위하여 권고된 정책과 전략적 기회 및 그 재정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한다(ITU헌장 10조 4항).

ITU의 전략 및 정책수립을 위한 제반 통시문제를 검토·심의하는 이사회(Council) 회원구성은 5개 지역의 회원국(Member states) 수에 비례하여 전권회의의에서 선출한다(한국은 1989년(니스), 1994년(교토), 1998년(미니애폴리스), 2002년(마라케쉬), 2006년(안탈라). 전권회의의에서 피선되어 활동 중이다. 우리나라는 터키 안탈라 전권회의의에서 전체 46개국 중 5위, E지역에서는 2위를 차지하여 이사국으로 5선 연임되었다.

2007년도 이사회는 2007년도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11일간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ITU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46개 이사국 대표단 및 회원국 옵저버 등 35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본부 국제기구팀장을 수석 대표로 하여 2개 조로 나뉜 대표단이 교차 참석하였다. 전권회의에서 선출된 46개 이사국간 회의인 이번 이사회에서는 본회의와 재정 및 관리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재정 및 관리 상임위원회에서 재정, 예산, 인사 및 조직 관련 사항에 관한 논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형식으로 ITU의 예산 및 재정, 각 부문별 운영 계획 심의,

외부감사 권고 이행 사항 및 작업반 활동결과 보고, WSIS, '06년 전권회의의 후속 조치 이행 여부, 향후 행사 일정 검토 등 총 50여개 이상의 의제를 다루었다.

〈표 3-1〉 ITU 이사국(2007~2010)

| Region A [8석] | Region B [8석] | Region C [5석] | Region D [13석] | Region E [12석] |
|--|--|------------------------------------|--|---|
|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쿠바 멕시코 트리니다도바고 미국 베네수엘라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 알제리 브루키나파소 카메룬 이집트 가나 케냐 말리 모로코 나이제리아 세네갈 남아공 탄자니아 튀니지 | 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사우디 태국 UAE |

〈표 3-2〉 2007 이사회 참석 우리나라 대표단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출장기간 | 임무 및 담당의제 |
|-------|-----------|-----|-----------|---------------------------|
| MIC | 국제기구팀장 | 이상학 | 9. 4~9. 9 | 수석대표 |
| | ITU/APT담당 | 강필구 | 9. 7~9.16 | 교체수석 |
| | 주무관 | 서정숙 | 9. 2~9. 9 | 대표 |
| RRL | 공업연구원 | 박주홍 | 9. 2~9. 9 | 전파(ITU-R)분야 |
| | 주무관 | 조태훈 | 9. 8~9.16 | |
| KORPA | 연구원 | 엄진우 | 9. 2~9. 9 | 전파(ITU-R)분야 |
| KISDI | 책임연구원 | 김태은 | 9. 3~9.11 | 정책, 전략, 예산 |
| | 연구원 | 안상은 | 9. 8~9.16 | |
| KADO | 단 장 | 박원근 | 9. 3~9. 6 | 개발(ITU-D) 분야 ITU 협력 사업 |
| | 팀 장 | 조정문 | 9. 2~9. 8 | |
| | 연구원 | 신수경 | 9. 8~9.16 | |
| TTA | 팀 장 | 박종봉 | 9. 2~9. 9 | 표준화(ITU-T) 분야 |
| KIICA | 연구원 | 이상훈 | 9. 2~9.16 | 인사, 일반운영 |
| | 연구원 | 안재혁 | 9. 7~9.16 | |

〈표 3-3〉 2007 이사회 의장단

| 구분 | 직위 | 성명 | 국가 |
|---------------------------|-----|-------------------|-------|
| 본회의 (Plenary) | 의장 | Mr. F. Riehl | 스위스 |
| | 부의장 | Mr. P. Vatchkov | 불가리아 |
| 재정 및 관리 상임위원회 (ADM) | 의장 | Mr. A. H. Ismail | 말레이시아 |
| | 부의장 | Mr. M. Fall | 세네갈 |
| | | Mr. C. A. Merchan | 멕시코 |

특히, 우리나라 대표단은 이사회 의제에 대한 총괄적인 대응 외에도 ITU와의 신규 협력 사업을 기획 협의하고, 전파분야 SG 의장단 진출을 위한 사전조정회의 참가 및 지지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2008년도 6월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OECD 장관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표 3-4〉 2007 이사회 일정

| 일시 | 9.3(월) | 9.4(화) | 9.5(수) | 9.6(목) | 9.7(금) |
|-----------------|--|--|--|---|--------|
| 09:30~ 12:30 | 10: 30 아·태지역 이사회 공동 대응 회의 | 개회 - 개회사 - ITU 현황 보고 (사무총장) - HLS(10:30~ 12:30) | PL - 정보격차해소 - WSIS 관련 ITU 활동에서 의 이해관계자 참가 - MBG 보고 | ADM | ADM |
| 12:30 | 점심 | | | | |
| 14:30~ 17:30 | 14: 00 WRC-07 Infor- mal meeting | PL - ITU 조직체계 및 연간 활동보고 - WSIS:ITU 역할 - 인터넷 활동 | PL - 08~09예산안 발표 - ITU-T권고안 무료온라인 열람 시행결과 ADM | ADM 17:30 운영위원회 18:00 RA informal 회의 | ADM |
| 리셉션 | 미정 | | | | |

| 일시 | 9.10(월) | 9.11(화) | 9.12(수) | 9.13(목) | 9.14(금) |
|-----------------|---------|--|--|--|--|
| 09:30~ 12:30 | ADM | PL - CWG 보고 (보안 정의) - 현장/협약 내용어 검토 - CWG 보고 (언어사용) - 이사회 절차 규정 - 운영 계획 (ITU-R) | 08:00 연금위원회 09:30 ADM (종료) | PL 항후 ITU행사 - 세계 및 지역 텔레콤 전시회 및 포럼(계속) - 이사회 및 PP 일정 - 08 이사회 일시/기간 - WTSA-08 - WTPF-09 - HCA 타당성 | 09:00 PL - 세계정보사회 날 - 회원 현안 - 폐기된 결의/ 결정 폐회 |
| 12:30 | 점심 | | | | |
| 14:30~ 17:30 | ADM | ADM 17:30 운영위원회 | PL - 운영 계획 (ITU-T, D, GS) - 지역주둔의 강화 - 세계 및 지역 텔레콤 전시회 및 포럼 | PL - WSIS 임시 작업반 보고 - MBG 임시 작업반 보고 - 이사회 절차 규정 임시작업반 보고 - 운영위원회 보고 | |

제 2 절 주요 의제별 논의

1. 예산 및 재정(MBG)

가. 2008~2008 예산안

2008~2009 예산과 관련하여 사무국은 예산(안)을 보고하고 동 예산이 12.9 M CHF 을 준비금으로부터 인출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었으며,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한국은 분담금 의존적인 ITU의 수입구조와 분담금 수입의 지속적인 감소세를 고려할 때, 자발적 기여를 포함한 새로운 수

입원의 개발이 비용절감 노력과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예산의 형식과 용어들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설명되며, 사용자 친화적(user-friendly)으로 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여 미국 등 많은 이사국의 지지를 얻었다.

또한 ITU사무국은 준비금 현황을 보고하고 예산 부족분을 준비금 계좌에서 보충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는데, 미국, 포르투갈, 독일, 스웨덴은 현재 및 향후의 준비금 수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사무국의 입장 및 조치를 촉구하였다. 호주는 보유하고 계좌에 대한 정보를 향후 자세하게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미국은 균형적인 예산 계획 수립 및 운영이 중요하다고, 현재 사무국이 예상치 못한 비용처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으로 준비금 계좌에서 충당하고 있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사무국에게는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업무 우선순위를 명확히 수립하여 엄격한 원칙에 의해 이행할 것이 요청되었다. 준비금 계정이 2009년말 기준, 5.9%가 될 것이라는 ITU의 보고에 대해, 일본, 호주, 프랑스 등은 2010~2011의 준비금 계정 예상치를 요구하였고, 3%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답변에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이에 많은 이사국이 2010~2011 준비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요청하는 기여금 단위액 증액(상한: CHF 330,000)은 불가하다는 의견 제시하였고,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전반적인 이해를 확인하며, 기여금 단위 한도 인상 없이, 새로운 수입원 창출, 신규 회원 모집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 재정 운영상의 투명성을 높여 장기적 성과를 거두겠다고 확인하였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충분치 않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무국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업무이며, 자세한 계획을 준비하도록 요청하여 준비금 준비 비율과 관련하여, 비율 등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준비금 계좌 현황을 회람하는 등 자세한 정보 및 사실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상세화 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 밖에 이슈별 예산계획에 대해, 터키는 2008~2009 예산에 Appendix로 첨부되어 있는 ITU TELECOM이 예산 승인의 대상인지 이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ITU의 법률자문은 ITU 재정규칙 3조에 동 사안이 명시되어 있음을 밝히고, 이는 TELECOM 예산의 투명성을 위한 것으로, 이사국은 이

를 주목(take note of)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스위스, 말리는 Satellite Network Filing과 관련한 취소된 등록에 따른 비용부과에 대한 결정 및 이행에 따른 2008~2009 예산에 대한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다.

사우디, 중국, 러시아는 6개 국어의 공정한 이용이 예산안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예산안에 반영할 것으로 요구하였는데, 사무총장은 새로운 수입원 창출 등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6개 국어의 공정한 이용을 실행하여, 2008년도 이사회에 경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하여 이사회의 공정을 얻어내었다.

멕시코, 독일 등은 기여금 인상보다 비용 절감 및 수입원 창출이 중요할 것이며, 시장 친화적 방안을 고려하여 더욱 많은 사람이 ITU 활동을 통해 혜택을 받도록 하여, 장기적 시장수익을 거둘 수 있는 수단 강구를 요청하였다.

한국은 새로운 수입원의 창출 등 ITU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출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확인함을 치하하고, 회원국의 자발적 인력 기여는 ITU의 인건비 절감 및 사무국 직원의 업무 부담 감소 등에 효과적인 방안임을 제안하여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진출 확대를 위해 논의를 개시하였다.

예산안 관련 모든 논의와 관련하여, ITU 사무총장은 현재 사무국은 극히 건전한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새 수입원 창출을 위해 노력 중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예산안은 특별한 이견 없이 승인되었다.

나. 운영예산그룹(MBG, Management and Budget Group)

2006년부터 논의된 이사회 내 운영예산그룹(MBG)은 ITU 집행부(사무총장등)의 활동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수시 조언하고자 전권회의(2006년, 터키)에서 창설이 결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MBG 설립에 대한 기고서 발표를 통해 MBG가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참여 이사국 및 인원수에 있어 개방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미국, 일본, 스페인 등 다수 주요 이사국의 지지를 받았으며 우리나라 기고서를 바탕으로 MBG의 임무, 구성 및 작업

방법에 대한 결의(안)이 마련되어 승인되는 성과가 있었다.

2006년 여름에 있었던 MBG 임시회의 결과에 대해 MBG 임시의장인 Mr. Mendez가 추진경과 및 결의(안)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이사회의장은 MBG 의장의 설명 후, 제출된 결의안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한국은 현재의 결의안은 수용할 수가 없으며, 한국 및 이사국들의 발언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되어야 함을 제기하였다. 한국은 위에서 밝힌 기고서(C07-57)를 발표하여, MBG 설립은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MBG가 이사회의 권한 및 활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Expert Group이 개방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결의안(임무, 작업방법, 구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촉구하였다. 이에 이사회는 동 기고서는 논의의 기본 문서로 삼아 이사회 중 ad-hoc 회의를 수 차례 열었다. 여러 주요 이사국이 참여한 회의에서는 개방성 및 투명성 등 우리의 주요 요청사항이 모두 반영된 MBG 설립 및 운영계획안이 마련되게 되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MBG 관련 초안에 전문가그룹(Expert Group) 설치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가(Expert)”에 대한 정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결의안에 첨부된 Expert Group의 구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는 지역 대표성을 띤 사우디 아라비아의 이사국 입장에서 다양한 경제규모를 갖는 중동 국가를 대표하여 MBG 활동의 참여비용을 개별 회원국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며, 이에 다수의 개도국들이 이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Expert Group과 관련하여 전문가를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인지와 지역적 형평성 보장등과 관련하여 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지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기하며, MBG 결의(안)의 자문과 업무 공조간의 불일치성을 지적하였다. 쿠바도 과거의 이사회 작업반 경험에서 볼 때, MBG와 관련하여서도 개도국의 경우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웠으며 전문가가 부족하기도 하여 이사회 내에 그룹을 만들어 참여함에 어려움이 많음을 토로하였다.

이 과정에서 MBG 임시의장은 이사국들과 협의를 통하여 결의안을 수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임시작업반을 구성하여 수정결의안 확정하였는데, 먼저 한국의 제

안에 따라 Expert Group을 ad hoc group으로 바꾸고 구성도 관련전문가로 일반화하였다. MBG 회원들의 동의(consensus)로 작성되는 이사회에 제출할 MBG 보고서도 이사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우려를 제기하여 ‘동의(consensus)’라는 단어를 삭제하였고, 개도국의 우려를 반영하여, 참여에 대한 자비부담 항목도 삭제하게 되었다. 1차 수정안에 대해 한국은 수정안 준비에 힘을 기울인 Mendez 의장과 Ad Hoc Group에 감사를 표하고, 수정안이 이사회의 요청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터키는 수정안이 제대로 요청을 반영하고 있으나, 수입 및 지출의 연차 검토를 MBG가 담당함을 명기하고, 몇 가지 자구 수정을 요청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또한, MBG를 이사회 회원국 전체가 아니라 ITU 전체 회원국에게 확대하자고 제안하였고, 러시아는 MBG의 권고는 관리 문제와 미래 방향성 결정까지 합의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ICT 환경에 맞는 자문을 제공” 하며 “ITU의 미래를 고려한 예산 및 활동 검토” 내용을 포함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USA, 스웨덴은 회원국 전체에 확대 및 ITU 미래상 고려 등으로 논의가 확대됨에 유감을 표명하고, MBG 논의가 운영 및 예산에 한정될 것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동 수정결의안의 검토 후 추가 수정없이 본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ITU 사무총장이 MBG 의장직과 관련하여 COG, NCOG의 경험과 기여를 고려하여 임시의장인 Mr. Mendez의 선임이 바람직함을 피력하였으나, 새로이 MBG 의장으로 Mr.Plamen Vatchkov(불가리아)를 선임하였다.

MBG 설립 관련 견해가 정리되면서, 미국은 MBG가 이사회를 대체해서는 안되고, 이사회를 보완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MBG 임시의장은 이사회와 MBG와의 위상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 MBG는 결정 및 결의 권한이나 기능이 없으며, 이사회의 위상은 존중될 것임을 확인하였고, 필리핀은 이사회 의 구성에 있어서의 지역적 형평성은 현장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대로 MBG와 관련해서도 본 원칙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ITU 사무총장은 과거 COG나 NCOG의 경우, ITU운영진과 긴장(갈등)관계가 있었음을 환기시키고 MBG와는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수립을 희망한다며, MBG가

사무총국 내의 micro management에 관여하여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최종적으로 MBG 설립안 채택과 함께, 터키의 요청으로, 임시의장 보고서에 MBG가 수입 및 지출의 연례 검토를 수행하기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을 명기하기로 결정하였고, 말리는 지출을 줄이기 위한 사무국의 구체적인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예산안 수립 내용을 검토하게 될 MBG가 이를 잘 검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조 직

ITU는 선출직 임원의 임기 개시 이후, 2007년 3월, 사무총국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향후 ICT 분야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체제로 사무총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편안을 서면동의를 받아 채택하였다. 이는 기존 사무총국 기능의 상당부분을 개발국과 표준화국으로 이관하고, 사무총국의 전략개발 위주의 리더쉽 기능을 강화함을 내용으로 한다. 사업기능 수행강화를 위해 BDT의 조직을 개편하여 Projects and Initiative Department를 설치하고 이 속에 Project Office Unit를 신설하였으며, 직원들의 프로젝트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수행시 여러 팀의 공동참여를 통한 효율적 수행을 예정하였다. 또한 다수의 소규모 프로젝트 수행을 지양하고 가능하면 큰 규모의 패키지 형태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제고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사무차장이 Chief of the Administration and Finance Department와 Chief of the Strategic Planning and Membership이라는 2개의 D2 직급의 모집을 위하여 D2 직급의 자격과 배경에 대한 이사회 검토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전면적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캐나다는 조직개편의 서면승인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이루어지는 서면승인도 정규이사회에서 사전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문제 제기하였다. 특히, 스페인은 D2 직급의 업무내용(Job Description)에 대한 검토는 채용공고가 나기 이전에 이사국에 대한 서면협의를 통해서라도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ITU의 기본 절차보다,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효율성 제고에 우선을 두는 현재의 업무추진 방식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일본 역시 일본은 1차 MBG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바와 같은 맥락에서 조직개편이 실질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에 성과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으며, 프랑스는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이의 검토와 관련한 절차 및 기제는 문제가 있으며, 향후 이러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기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현장에 명시된 사무총장의 이사회에 대한 책무를 환기시키며 이사회의 권한을 재확인하였다. 나이지리아는 D2 직급과 관련하여 ITU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고위정책결정자 직급에 여성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음을 지적하고, D2 직급의 채용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며, 고위 직급에서의 성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확대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이사국들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된 ITU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절차 및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향후 조직개편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무차장은 일본 및 캐나다가 제기한 조직개편의 효과성 및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답변은 9월에 조직개편 완료 후 보고서로 제출하겠다고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미국, 프랑스, 터키 등은 ITU의 사업수행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결과를 다음 이사회에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특히 미국은 이런 노력이 새로운 조직의 신설 등 ITU의 재정 부담을 초래해서는 안됨을 강조하고, 프랑스는 관리운영경비의 사용현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별도로, 각국은 ITU 지역사무소의 역할을 강조하고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세네갈, 나이지리아, 튀니지, 부르키나파소, 말리, 카메룬 등 아프리카 권역에서는 지역사무소의 인력 보강 및 신규 사무소 설치를 요구하였고 불가리아, 러시아, 체코 등 동유럽 권역에서는 지역사무소가 절실하며 이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지역사무소 강화를 지지하나 ITU의 재정적 한계를 고려하여 지역사무소의 인력 충원 및 예산 증액보다 지역 통신협회의 협력을 통한 강화방법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고, 말레이시아, 말리 등도 같

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캐나다, 프랑스는 현 사무총장이 지역사무소를 평가하는 방법 외에 UN의 지역사무소 평가시스템을 참고하여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하였으며, ITU 사무총장은 UN 기준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역사무소의 서비스를 평가할 것이며 개발국장에게 다양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답변하여 논의를 맺었다.

또한, 전권회의 06 결의 148 이행 사항으로서 ITU 사무총장의 임무와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사권을 제외한 공공 서비스, 회의 및 출판, 정보서비스 관련 전권을 위임하는 임무 강화안이 제안되었다. 대부분 이사국이 이에 대해 찬성 의사를 보였으며, 터키는 진행 상황을 2008년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여 특별한 이견 없이 채택되었다.

3. 인 사

조직개편과 같은 맥락에서 신임 사무총장 하 인적자원의 재편이 함께 논의되었다. 캐나다, 프랑스, 불가리아에서는 D1, D2급 등 고위관리직에서 여성의 진출이 저조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문제를 제기하여, 현재 신규 창출 승인이 제안된 D2급 여성 전문가 등용을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남아공은 Internship 프로그램의 지역별, 성별 채용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여 차후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논의되었다.

전체 사무총국 인사를 검토한 결과, 튀니지는 전체 직원수의 50%가 9개국에서만 채용된 것을 근거로 지역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위치상 스위스 근처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채용되었고, 현재는 형평성이 완벽하지 않지만 추후 개선할 것이며, 일부국가들의 요청에 의한 자국민 추천방식으로 채용을 하기보다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순수하게 능력중심으로 채용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튀니지, 터키는 채용기준에서 언어능력관련, 영어 및 불어 사용을 못해도 각국의 특정기술 분야 특기자를 고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사무총

장은 인터뷰 시 통역문제 등을 예로 들어 전 세계 모든 언어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ITU는 현재 영어 및 불어에만 한정짓지 않고 수요에 따라 채용하고 있음을 거듭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사무총국 내 현재 인적자원 재편 문제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은 예산절감을 이유로 5년 이상 상근으로 재직할 직원 대상으로 일회적으로 자원퇴직제 실시할 것을 이사회에 승인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포르투갈,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본 제도가 예산절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설명자료가 없으며, 해당 대상 직원이 누구인지와 지난 번 실시되었던 자원퇴직제도의 성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되지 않은 선례가 있었다며 의문을 제기하였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독일 등은 본 제도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고, 한국은 자원퇴직제의 실시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 등 실효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직원사기 저하 우려를 표명하였다.

사무차장은 자원퇴직제의 대상이 되는 특정부서 및 직원은 없기 때문에 직원사기 저하문제는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더 능력 있는 전문가들의 채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업무 프로세스 강화 등 긍정적인 결과가 일어날 것을 강조하였으며, 자원퇴직을 신청했다라도 협상도중 원하지 않으면 재고용할 것임을 답변하였다. 이에 덧붙여 사무총장은 자원퇴직제가 2008~2009 예산에는 영향이 없지만 2010~2011 재정적자 등 잠재적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적극 설명하였고 이에 본 제도가 승인되었다.

4. 텔레콤(ITU Telecom) 행사

전세계적으로 ITU 주관, 개최하는 ITU 텔레콤 포럼위원회, 전시위원회, 운영위원회로 구성되는 새로운 텔레콤 위원회 조직과 2009년까지의 텔레콤행사 개최지, 개최일정을 ITU 사무총장이 보고하였다. 터키는 ITU 전권회의를 안탈라에서 개최한 경험을 들어 2009년까지의 모든 행사에 대하여 수익창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라고 요청하였다. 불가리아는 유럽 텔레콤 2007(ITU Telecom Europe 2007)의 취소원

인이 된 적자예산의 근거를 차기 이사회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개최지 선정기준을 공개하도록 촉구하였다. 한국은 역시 지난 ITU 텔레콤 아시아 개최 경험과 개최지 선정에 지원했던 바를 들어 텔레콤 개최지의 선정기준 및 개최 최종신청일, 현지 실사, 개최일을 포함한 개최지 선정계획 일정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미 선정된 행사에 대해서는 근거를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기존에 텔레콤 행사와 관련하여 선정기준 및 성과 보고 등 행사 진행과 관련된 실제 정보가 전혀 공유되지 않았던 점에 대한 이의가 많이 제기되었다. ITU 사무총장 및 ITU 텔레콤 사무국 대표는 기존에도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제대로 공유되지 못했던 바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 및 불가리아의 의견을 받아들여 텔레콤 개최지 선정계획 일정 및 기준은 행사일 기준 3년 전부터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전권회의 06 결의 144(안탈라, 2006)에서 ITU 컨퍼런스 주최국의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해 각 행사마다 적어도 개최일로부터 2년 전까지 사무총장이 개최국 협약 모델(Host Country Agreement, HCA)을 작성하여 이사회에서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음을 밝혔다. 터키는 지난 PP-06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HCA의 세부항목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기고문 내용: 비자발급 기간, 관세환급의 범위, 추가비용에 대한 주최국의 조정권리, 협약의 효력시점에 대한 주최국의 결정권한을 수정하고 개최지 실사 및 평가내용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아랍에미리트(UAE)는 본 협약 모델의 강제성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과, 협약 체결문서를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작성·보존하도록 한 초안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영어와 주최국의 언어로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러시아는 이에 반해 3개 국어가 아닌 ITU 6개 공식 언어로 작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는 본 협약 모델이 각국의 국내법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점을 언급하며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만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나이지리아, 세네갈은 일부 국가의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정안에 회의 1주일 전에 비자를 승인하라는 문구 삽입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ITU 사무국은 본 협약모델이 주최국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위주로 하여 강제성이 전혀 없는 예시들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ITU 사무국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자와 입국 문제와 관련하여 협약 모델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 각국의 법체계에 맞추어 개최국과 협의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으며, 협약 모델이 6개 국어로 작성될 것이라 답변하였다.

미국, 중국, 필리핀은 협약 모델이 각국의 국내법에 의거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사회 승인을 거부하고, PP-98 때 사용된 프랑스 및 일본의 협약 모델처럼 본 모델도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멕시코는 이 모델이 단지 참고용이라는 전제하에 승인하겠다고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불가리아는 ITU 텔레콤을 위한 별도 협약 모델을 작성하여 MBG의 검토 후, 2008년 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개최국 협약 모델과 관련하여 논의가 확대됨에 대해, 이사회 의장은 이 모델을 당분간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협약모델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진행하여 협약 모델의 필요성 자체를 2008년 이사회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의하여 결정되었다.

5. WTPF 및 기타

ITU는 전권회의 06 결정 9에 따라 8년 만에 제4차 World Telecommunications Policy Forum(WTPF, 세계통신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음을 보고하고, 의제 관련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과정에 있으며, WTPF의 결과는 회원국에게 강제적이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한국은 WTPF가 8년의 간극을 극복하고 개최됨을 치하하고, 전권회의 06 결정 9에 의해 컨버전스 이슈가 다루어짐에 따라, 동일하게 컨버전스 이슈를 주요하게 다루는 OECD IT 장관회의(2008. 6. 17~18, 서울)의 성과를 반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자고 제안하였다. 캐나다는 이번 이사회가 장소 및 날짜만 결정하고, 결정 9에 의한 의제를 상세히 논의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WTPF의 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시간이 없음에 우려 표명하고 2008년도 이사회가 원안대로 11월에 개최될 시에, 시간이 촉박함을 지적하였다. ITU는 전권회의 결정 9의 효력에 의해, 이사회가 의제를 변경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결정된 4가지 이슈를 모두 다루어야 할 것이며, 사무총장 보고가 열람되고, 전문가 그룹이 결성되면 더욱 자세

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따라, 제4차 WTPF의 장소 및 일자는 원안대로 결정되었다.

WTPF와 별도로 개최되는 2008년도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WTSA-08, 세계통신표준회의)를 개최하면서 개최지를 스위스에서 남아프리카로 변경하는 점을 논의하게 되었다. 남아프리카가 개도국 표준격차 해소를 위해 WTSA-08 개최를 강력히 희망하였으며, 세네갈, 스웨덴, 나이지리아가 지지 발언을 하였다. 스웨덴은 이사회 일정을 고려하여 WTSA-08 일정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표준화 국장은 일정 변경 시 예약과 관련하여, ITU가 패널티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고 답변하여 개최시기(2008. 10. 21~30)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동 시기 WTSA를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사회 내 각종 작업반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WSIS 이사회 작업반(WG-WSIS)의 활동 결과 보고가 있었다. ITU로 하여금 WSIS 목표 달성을 위한 2015년까지의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하고, ITU 역할에서 인프라 및 보안 영역 외에도 인력양성, ICT 활동, 문화적 다양성 등의 영역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WSIS 이사회 작업반(WG-WSIS) 내 임시작업반(Ad-hoc)이 여러 의견을 통합하여 하나의 결의안을 작성하였으며, 본회의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채택되었다.

WSIS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이사회 작업반(Council WG-Study)은 공개협의(Open Consultation)를 통해 ITU의 WSIS 연계 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하여 2009년도 이사회에 최종 보고서 제출하기로 한 바를 발표하였다. 이해관계자의 범위 정의에 대한 논의에서, 비 국가 단체의 폭넓은 참여의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공개협의에 비ITU회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비 국가 단체의 ITU 활동 참여 관련 Working Party를 구성하여 논의하였다. Working Party는 참여대상, 방식, 사업부문 및 기대효과에 대해 조사하여 2008년도 이사회에 보고하고, 2009년도 이사회에 최종 보고서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내년 2월(3번째 회의)에서 최종 보고서 목차를 준비하되, 필요할 경우 4번째 회의를 내년 11월전(08 이사회)에 개최하며 보고서를 위한 공개 협의(Open con-

sultations)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설문은 회원국, 부문회원을 포함하여 모든 WSIS 관련 민간부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되, WSIS 이해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도 포함하기로 하였다. ITU현장 및 협약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항은 ITU 회원국에게만 문의할 것이 제안되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라는 용어 대신 비ITU회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의견 제시되었으나, 설문지의 각 질문별 대상 및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메일 및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제 3 절 2007년도 ITU 이사회의 성과와 정책적 합의

1. 2007년도 ITU 이사회의 주요 성과

2007년도 ITU 이사회는 ITU 내 실질적인 사안에 대한 많은 결정을 내린 회의였다. 2008~2009 예산안 승인과 관련하여 ITU의 단위당 분담금을 증액없이 318,000 CHF에서 동결시키고, 예산부족분은 예비비 계좌에서 쓰도록 하였고, 분담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재정구조의 문제와 예비비 계좌잔고의 고갈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신임 사무총장이 분담금 연체금 등 미납금 해결과 인건비 절감, 투명한 예산집행 등으로 지출을 축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여 재정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 회의였다.

ITU는 현재 날로 확대되어가는 IT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WSIS 후속조치의 이행 등과 연계하여 2015년까지의 활동 로드맵을 작성하고, ITU 역할에서 인프라 및 보안 영역 외에도 인력양성, ICT 활동, 문화적 다양성 등의 영역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ITU의 핵심임무(core mission)를 규정하는 작업에 공개협의 등을 통해 폭넓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업반에서 내용이 진행되면 모든 의견을 취합하기로 하였다. ITU 개혁은 2007년 1월부터 도입된 성과 기반 관리(RBM)를 기반으로 전략계획·재정계획·실행계획 간의 연

계 강화, Time Tracking System을 통한 비용 할당제, 서비스 수준 협정(SLA) 도입, KPI 도입 등을 주요 달성 목표로 선언하였다.

RBM 도입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과정의 확실한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사무총장의 발표도 있었으나, 무엇보다 이번 이사회의 성과는 새로 운영진 자리에 앉은 ITU 사무총장 및 차장, 각 부문 국장급 임원이 ITU 업무를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제대로 파악하였으며, 조직개편 및 재정 개혁을 비롯한 향후 활동 계획을 명확히 이사국들에게 제시하여 주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었다. 능력 있고 경험이 많으며 인적으로 안정된 임원진을 통해 ITU는 조만간 세계적으로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효율적 전문기구로 자리매김하여 명실상부한 IT 최대 국제기구로 각인되리라는 기대를 품게 한 회의였다.

2. 우리나라의 주요 활동 및 성과

5선 이사국으로 연임되어 꾸준히 이사국 활동을 지속해온 우리나라는 2003년에 COG 회원, 2005년에 NCOG의 회원으로 선임되어 ITU개혁을 위한 이사회 감독그룹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금번 이사회에서도 MBG 구성 관련 기고문을 제출하여 논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번 2007년도 이사회에서는 운영예산그룹(MBG)의 신규 결성과 관련하여 논의의 자체를 처음부터 주도하여 나가면서 우리나라 대표단의 전문성을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MBG 설립에 대한 기고서 발표를 통해 MBG가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개방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미국, 일본, 스페인 등 다수 주요 이사국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에 우리나라 기고서를 바탕으로 MBG의 임무, 구성 및 작업방법에 대한 결의(안)이 마련되었고 최종 채택되는 성과가 있었다. 향후 MBG를 통해 매년 ITU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며, 이에 우리나라도 MBG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컨버전스를 주요 이슈로 다루는 OECD 장관회의가 10년만에 서울에서 개최됨을 발표하고, 컨버전스 이슈를 다루는 세계통신정책포럼(WTPF) 등의

ITU 행사시에 OECD 장관회의 성과를 반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ITU 내 인적자원 및 조직개편 등과 관련하여서도 적극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회원국의 자발적 인력 기여는 ITU의 인건비 절감 및 사무국 직원의 업무 부담 감소 등에 효과적인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고, 일회적 자원퇴직제 실시안에 대해 산절감 효과 등 실효성 및 직원사기 저하, 투명성 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여, 이는 순수히 희망자에 한하여만 실시하는 것이며, 인건비 절감, 능력 있는 신규 직원채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사무총장의 답변을 얻어내기도 하였다.

특히 텔레콤 행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텔레콤 행사의 개최지 선정기준 및 신청 마감일자 등을 포함한 개최지 선정계획 수립 등 투명한 절차 보장을 요구하여 사무총장은 텔레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마케팅을 포함한 전반적인 전략 및 활동 변화를 추진중임을 밝히고, 우리나라 의견을 받아들여, 향후 행사시에는 텔레콤 개최지 선정계획 및 기준을 공개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는 등 다양한 주제에 있어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을 적극 제시하고 이에 ITU의 답변 및 향후 대응을 이끌어내는 결실을 맺었다.

제 4 장 2007년도 APT 주요 논의

제 1 절 APT 개관

APT는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sia-Pacific Telecommunity)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유일한 전기통신관련 전문 국제기구이다. APT는 역내 전기통신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간 협약에 의해 1979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32개 회원,⁹⁾ 4개 준회원,¹⁰⁾ 94개 협찬회원¹¹⁾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79년 APT창설 시부터 가입하였으며 1994년 북한도 가입하였다.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APT는 최근 정보통신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유화, 경쟁도입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존립기반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현장개정 활동 등을 통해 이러한 위기 와 도전을 극복하여 아·태 지역 IT협력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 추세 속에서 지역협력의 중요성 증대로 인하여 APT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써 APT 자체 개혁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협력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¹²⁾

APT의 조직은 총회(GA, General Assembly), 관리위원회(MC, Management Com-

9) APT 회원국(32): 아프가니스탄, 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중국,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한국, 북한,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마이크로네시아, 몽고, 미얀마, 나라우,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통가, 베트남

10) APT 준회원(4): 쿡아일랜드, 홍콩, 마카오, 니우에

11) APT 협찬회원은 APT 회원국의 주요 IT업체 및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KT, 삼성전자, LG전자, SK 텔레콤, 퀄컴 코리아, ETRI 등의 APT협찬회원이 있다.

12) 서보현, 정인역 외, 『국제기구의 주요정보통신 정책이슈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연구』연구보고 02-06, KISDI, 2002.

mittee), 사무국(Secretariat)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회는 모든 회원국과 준회원으로 구성된 APT 최고 기관으로 정기적으로 3년마다 만나 전기통신연합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과 원칙을 수립하며 연간 예산과 지출의 한계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협정을 체결하고 개정한다. 총회는 매 정례회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APT 관리위원회는 총회에서 결정된 일반정책 및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수행된 결과들을 검토하는 위원회로서 APT 회원국과 준회원, 협찬회원 및 국제기구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APT 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년도의 사업 및 예산, 주요 회의의 결과들을 검토하고 차기년도의 사업과 예산안을 승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예산 및 Work Program에 대한 검토와 사무국 구조조정 등 APT의 운영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계획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PT 관리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개최되어 총회의 정책과 원칙을 수행하고 사무국의 기능을 감독하고, 사업, 연간 예산, 회계검토 및 승인과 법규제정 등을 담당한다. 관리위원회에서는 2년마다 한 명의 의장과 두 명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APT 사무국은 1979년 태국 방콕에 상설기구로 설치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무국 구성은 총장 1인, 차장 1인 및 직원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PT의 각종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다. 후술하겠으나 2007년 관리위원회에서는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의 선거가 있었다. APT의 재정은 회원국들의 정규 분담금과 다양한 기관 및 회원국들로부터 받은 특별분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PT 예산 및 회원국의 분담금은 매년 열리는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07년도 제31차 관리위원회는 2007년. 11. 27(화)~11. 30(금)의 일정으로 우리나라 서울 리즈칼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회원국(28개국) 정부대표, 준회원(홍콩, 마카오) 기업회원(18개사) 등 130여명(장관급 3명 포함 국장급 이상 19명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국제기구팀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1명 참여하였다. APT 관리위원회에서는 2008년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와 차기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림 4-1) APT 조직도



특히 나라안(Narayan) APT 사무총장은 APT가 아태지역의 핵심적인 협력 주체로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운영비용의 증가, 부문회원들의 저조한 참여, APT활동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의 문제와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APT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특히 캄보디아가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NAURU가 APT활동을 재개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하고, 현금 및 현물 특별분담금 기여를 한 회원들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부 김동수 차관은 축사를 통해 APT의 아태지역 정보통신 발전과 확산에 대한 공헌을 치하하고, APT의 노력을 초청연수와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앞으로도 역내 IT발전을 위한 APT의 활동에 기여할 것임과 신임 운영진 선출로 APT가 더욱 발전하고 회원국 간 협력이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리위원회 의장은 관리위원회가 APT의 사업 및 운영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이를 통해 다이내믹한 ICT 환경과 회원국의 수요가 잘 반영된 APT의 사업전략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신임 운영진 선출로 APT가 더욱 역내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였다.

〈표 4-1〉 제31차 APT 관리위원회 일정

| 시간 | 11.26(월) | 11.27(화) | 11.28(수) | 11.29(목) | 11.30(금) |
|-----------------|------------------|----------|--------------|--------------|----------|
| 09:30~ 12:30 | | 개회식 | 선 거 | 예산·사업 위원회 | 총 회 |
| 오찬 | | | | | 환송오찬 |
| 14:00~ 17:00 | 운영위원회 | 총 회 | 예산·사업 위원회 | 예산·사업 위원회 | 총 회 |
| 17:00~ 18:00 | 등록 시작 (18:00) | 수석대표회의 | | | |
| 19:00~ 21:00 | | 환영 만찬 | | | |

제 2 절 운영진 선거

APT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의 선거는 APT 개정 현장의 발효로(2007. 8) 사무국장(Executive Director)로 변경되고, 선거관련 절차와 관련하여 경과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진행되었다. 사무총장은 현 사무차장인 일본의 Mr. T. Yamada가 단독 출마하였으며, 사무차장에는 Mr. R. Box(호주), Mr. A. Kannan(말레이시아), Mr. M. Amir(몰디브), Mr. K. Pornsutee(태국) 등 4인인 입후보 하였다.

총 34개 회원국 중 28개국이 투표에 참여하여 사무총장은 일본의 야마다 후보가 총 28표를 획득하여 1차에서 당선되었으며, 사무차장은 3차까지 가는 경합을 통하여 태국의 폰수티 후보가 18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신임 야마다 사무총장은 수락연설을 통하여 신임 사무차장과 협력하여 재임기간 동안 인력개발(HRD) 활동 강화, APT 지역의 세계적 영향력 강화, 최빈국 및 도서국가의 이해 고려, 정부와 민간의 협력 강화, APT의 효율적·효과적 운영 등의 5대 분야에 노력을 경주할 것을 선언하였다.

〈표 4-2〉 APT 사무차장 선거 결과

| 후보국 | 1차 | 2차 | 3차(최종) | 비고 |
|-------|----|----|--------|-------|
| 호주 | 9 | 10 | 9 | |
| 말레이시아 | 5 | 5 | — | 3차 사퇴 |
| 몰디브 | 4 | — | | 2차 사퇴 |
| 태국 | 10 | 13 | 18 | |

제 3 절 제31차 APT 관리위원회 주요 논의

APT의 논의는 예산작업반(Ad hoc Group on Budget)과 사업계획작업반(Ad hoc Group on Work Program)으로 나뉘어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본회의(Plenary Meeting)에서 결정하고 채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 사업계획작업반(Ad hoc Group on Work Program)

사업계획작업반은 2008년의 사업계획(Work Program)과 2007년 사업의 결과보고를 검토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위하여 상정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2008년 사업계획(안)은 우선 사업의 내용을 프레임워크(Framework)와 개발(Development)의 2개의 범주로 크게 나누고, 주요 활동목적에 따라 Framework는 ICT 정책과 규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전파통신의 3개 분야로 나누었으며, Development는 정보격차 해소과 정보인프라 개발, 정보사회구축을 위한 e-Application의 개발촉진, 역량배양 및 자원 조달, 운영 및 사업, 재난관리, 정보공유 및 축적, 지역의 key player로서의 APT의 위상제고라는 10개 분야로 나누었다. 각각의 프로그램의 내용, 개최장소, 일시, 예산 등을 template 로 작성하여 회원국들의 검토를 용이하게 하였다.

각각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정책/규제포럼(1.1.1)은 상반기에 개최하고 통신 무역절차 및 규제원칙 워크샵(1.2.1)는 하반기(9월경) 개최 추진을 계획중이며, ASTAP-14(2.1.1)는 제2차 WTSA-08준비회의(2.4.1.)과 연계하여 6일간 일본 고베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표준화격차해소포럼(2.1.2)도 제3차 WTSA-08준비회의(2.4.2)와 연계하여 6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APT연구반(2.3.1)은 이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태평양 도서국가를 위한 정보통신 개발 및 NGN활용 워크샵(4.3.1)은 일본 특별분담금(35,000불) 사용할 계획이다. APT정보시스템(9.3)은 AWF에서 제안한 주파수 DB 관련사항이 포함되길 희망하였으나, AWF에서 DB 관련 S/W를 먼저 구축한(예산 할당) 후 추후 DB 관련장비를 구축토록 추진 중이다. 다음은 사업계획 작업반에서 논의된 2008 APT사업계획(안)을 정리한 것이다.

〈표 4-3〉 2008 APT 사업계획안 검토 결과

| 구분 | 내 용 | | 비고 |
|----|--|---|------------------------------------|
| P1 | ICT Policy and Regulation | | |
| | P1.1.1 | PRF | 승인 (작업방법 포함) |
| | P1.2.1 | APT Workshop on Trade Rules and Regulatory Disciplines | 승인 (PRF와 interval을 두어 9월 경에 개최 추진) |
| | P1.4.1 | Tenth SATRC Meeting | 승인 |
| | P1.4.2 | SATRC Action Plan (Phase-II) | 승인 |
| | P1.4.3 | Telecommunication ICT Policy and Regulation Meeting for Pacific under sub-regional activities | 승인 |
| P2 | Technology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 | |
| | P2.1.1 | 14 th ASTAP Forum | 승인 (일본 개최) |
| | P2.1.2 | The Forum on Bridging the Standardization Gap | 승인(ITU협력프로그램, 베트남 개최) |
| | P2.3.1 | 28 th Study Group | 승인 (이란 개최) |
| | P2.4.1 | Second APT Preparatory Meeting for WTSA-08 | 승인(ASTAP-14와 연계 일본 개최, 5-6일) |
| | P2.4.2 | Third APT Preparatory Meeting for WTSA-08 | 승인(P2.1.2과 연계하여 베트남 개최, 5-6일) |
| P3 | Radiocommunications | | |
| | P3.1.1 | APT Wireless Forum(AWF) | 승인 (마카오 개최) |
| | P3.1.2 | AWF Interim Meeting 2008(AWF-IM4) | 승인 |
| | P3.2.1 | APG | 승인(P3.1.2와 연계) |
| P4 | Bridging the Digital Divide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 | |

| 구분 | 내 용 | | 비고 |
|-----|--|---|--|
| P4 | P4.1.1 | ADF | 승인 |
| | P4.3.1 | Workshop on Telecommunications/ICT Development and NGN for Pacific(with PITA) | 승인 |
| | P4.3.2 | Sub-Regional meeting on improving Network Connectivity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EBC-SATRC | 승인 |
| | P4.3.3 | Enhancing the Development Effectiveness for the GMS Program | 승인(ADB 예산 사용검토) |
| | P4.3.4 | Sub-regional meeting on Network Development for the Pacific(jointly with PITA) | 승인(일본 특별분담금 35,000불 사용) |
| P5 | Promoting Development of E-Applications for Creation of Information Society | | |
| | P5.1.1 | Regional Meeting on E-Government(jointly with ESCAP) | 승인 |
| P6 | Capacity Building and Mobilizing Resources | | |
| | P6.1 | Training | 승인 |
| | P6.2 | Study Visit | 승인 |
| | P6.3 | Expert Mission | 승인 |
| P7 | Operations and Business | | |
| | P7.1.1 | APT Operators Forum (AOF) | 승인 |
| | P7.1.2 | Regulators-Industry and Investment Dialogue | 승인(AOF와 연계) |
| P8 | Disaster Management | | 승인 |
| P9 | Information Sharing and Data Compilation | | |
| | P9.1 | APT Yearbook | 승인 |
| | P9.2 | Broadband Compendium | 승인 |
| | P9.3 | APT Information System | 승인(기존 시스템 활용 및 AWF의 주파수 DB에 사용, 추가 비용은 차기 MC에서 논의) |
| P10 | Enhancing APT's Role as a Key Regional Player | | |
| | P10.1 | Intra-regional and Inter-regional cooperation | 승인 |
| | P10.2 | APT Young Professionals and Students Forum | 승인 |
| | P10.3 | APT Promotional activities | 승인(예산 배정필요) |
| | P10.4 | Official Travel | 승인(예산 배정필요) |

APT의 국제협력(10.1)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기구와의 협력으로 충분한지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기구간의 협력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이 요청되었다.

ASTAP의 활동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동 내용 중 ASTAP에서 제출한 재난관리 관련 권고(안)에 대하여 한국은 동 권고의 개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기고서를 권고의 부속서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중국은 MC가 기술적인 권고를 승인하는 주체로서 타당한지, 한국이 지적한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한 권고를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지, 권고 개발 작업방법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며, 승인 반대하였다. 일본은 동 권고(안)이 2년동안 ASTAP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하였으며, 동 권고가 승인 후 차기 ASTAP에서 재난 관련 후보기술을 추가 수용하여 개정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동 권고는 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국이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ASTAP에서 채택한 첫 번째 권고라는 점에서 가능하면 이번 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되기를 희망하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 태국, 호주, 뉴질랜드는 동 권고에 한국의 기고서(21.8)를 기반하여 차기 ASTAP회의에 동 권고의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함을 주석으로 처리하지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작업반은 이를 승인하였다.

ASTAP의 작업방법과 관련하여 비회원(Guest)의 ASTAP 초청은 해당 국가에 어떤 산업체가 참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APT 회원으로 가입을 유도하도록 관련 조항(2.6)을 개정하여 승인키로 결정하였다.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관련하여 한국은 다른 기관과의 MoU 체결은 APT의 역량을 늘린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MoU 체결과 관련된 명확한 근거 및 조건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고, 사무국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들을 포함하여 협찬회원의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본 관리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한 WiMax 포럼과의 MoU와 관련하여 동 포럼을 포함한 다른 포럼들과의 협력에 있어서 Wireless coordination body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의장 및 담당자가 발언하였다.

ADF(Asia · Pacific Development Forum)의 개최결과와 특히 동 포럼의 결과로서 Forum of APT Researchers, Telecenter Forum 신설 제안에 대해서 한국은 APT 사업 계획의 재구조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총회에서 이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Tele-

center Forum을 통하여 다양한 국가의 Telecenter 모델을 취합하고, 이를 통해 이상적인 Telecenter 모델 개발 등 가능하다는 제안 설명에 대해 한국의 ADF 등 기존 포럼을 이용하여 정보 공유가 가능함으로 신규 포럼의 설치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다음 GA까지는 ADF 아래에서 논의하고, 신설이 결정되면, 인도네시아가 개최할 것이라고 발언하였으며, 일본과 중국은 신규 Forum 신설 비용과 APT의 제한된 예산을 생각할 때 신규 포럼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정책규제포럼(Policy and Regulation Forum)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 한국의 제안대로 차기 회의(몰디브)는 ITU의 제4차 WTPF 의제에 대한 지역 사전협의를 포함하여 논의기로 하였다. APG 활동 보고는 사무총장이 APG 활동결과를 요약하고 한국에서 APG회의에서 RA 문제를 다루는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기고서를 포함하여 승인하였다. AWF 보고서 검토와 관련하여 중국은 AWF 작업에 Guest로 참여할 경우 해당 국가에 관련 정보를 송부하여 추후 APT 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ASTAP 작업방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파수정보 이용시스템 구축 및 예산 할당을 승인하고, 만약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다면 차기 MC에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AWF에서 제안한 4건의 권고(안)에 대하여 권고(안) 1, 2, 3은 이견 없이 승인하고, 4번(항공기내 5GHz 대역 무선랜 이용)은 중국은 자국의 주파수문제로 인하여 항공기내의 5.2GHz 무선랜 사용에 대한 권고에 대하여 유보 입장을 나타내었다. AWF 의장은 이미 워킹 그룹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회원국에 회람승인 절차를 수행하여 중국으로부터 아무런 반대 입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말하고 APT 관리위원회에 권고가 상정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승인하고 차기 회의에서 중국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연구할 계획을 제안하였으나 파키스탄은 이미 WRC에서 PPDR 등 동 권고들에 연구를 하므로 승인하여도 별 문제가 없음을 제기하였다. 항공기내의 5GHz 무선랜 사용에 대한 권고는 중국의 의견을 포함하고 승인기로 하였다.

한국은 신규 선출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향후 APT 운용계획 수립의 일환으

로 사업계획의 구조개편안을 차기 총회(2008, 말레이시아)에 제출할 것과 회원국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Ad hoc 그룹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호주,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중국, 베트남은 한국 의견을 지지하며, APT 전략계획과 연계하여 동 사항이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구조개편 시 현재 운영중인 사업들의 지속성(consistency)도 동시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초안 개발 주체에 대한 논의가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장시간 논의되었으나, 한국이 제안대로 (1) 사무국(신임 사무총장/사무차장)이 초안을 개발하고, (2) 이를 회원국에 의견수렴을 실행하고, 의견수렴기간 동안 회원국의 추가 제안을 수용하고, (3) 이를 반영하고 차기 총회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2. 예산작업반(Ad hoc Group on Budget)

분담금의 연체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문서 상에 연체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회원체 Ericsson, Australia가 연체금을 지불하였음을 환기시키고 APT 분담금의 현황을 보고하였다. 특히 나우루의 복귀와 관련하여 나우루 측이 요청한 연체금 청산과 관련하여서는 나우루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하며, 나우루의 APT 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것에는 입장을 같이하나, APT 내부에 이와 관련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안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ITU와 달리 APT의 경우 연체금에 대해 이자가 부가되지 않으며, 회원국이 연체금을 상환하였을 경우도, 투표권 회복은 총회 승인사항이며, fellowship, 등록비 면제, APT웹사이트 접근권 등도 이에 해당된다는 사무국 측의 설명이 있었다. 관리위원회는 총회에 ITU의 사례를 따를 것을 권고하고, 사무국에 ITU의 관련사례의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우루의 연체금 청산절차와 관련하여, 잠정적으로 최대 10년간의 동안에 걸친 청산에 대해서 사무국이 나우루와 협의하도록 하였다.

APT의 재정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2006 외부감사보고 및 2007 수정예산은 이견 없이 통과되었다. 2008 추정예산과 관련하여 인건비에서 현재 공식중인 Project Development Director의 예산이 1년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원국들의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사무국은 계획상으로는 2008년 1월 1일부터 고용 예정이나 현 시점에서 볼 때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일본은 일반적 직원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현재의 달러 약세 및 바트화 강제 추세를 고려할 때, 너무 낙관적인 수치로 계상하였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로 인하여 예산의 부족이 발생할 경우,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였다. 사무국은 방콕의 실 환율을 고려할 때 현재의 환율이 적정하며, 인건비 부문을 증액할 경우, 지난 총회에서 결정된 예산상한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부문의 예산을 줄이는 결과가 된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예산검토를 위해 2007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2008년 사업계획의 재정적 측면을 논의하였으나, 별 이견 없이 통과되었다. 상기 논의를 바탕으로 2008예산은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다.

〈표 4-4〉 2008 APT 예산

| 항 목 | 금 액 |
|----------------------------|----------------|
| 인건비(Staff) | US\$ 1,256,451 |
| 관리비(Administration) | US\$ 135,000 |
| 사업비(Work Program) | US\$ 982,450 |
| 준비금계좌이체(Input to R&R Fund) | US\$ 10,000 |
| 총액(Total) | US\$ 2,383,901 |

외부감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4개의 외부감사들의 제안서에 대해 회원국들은 이들이 제출한 금액에 같은 조건으로 작성되었는지와 이들에 대한 용역비가 달러로 지불되는지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Thorton社를 외부감사로 결정하였다.

특별 분담금과 관련하여 2007년 회기에 회원국들이 현금 혹은 회의 및 워크샵 개최 등 현물을 통해 기여한 특별분담금 내역이 보고되었으며, 일본이 가장 많은 분담금을 지불하였으며, 다음으로 한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무국은 2008년의 특별분담금과 관련하여 방글라데시와 몰디브가 각 1단위, 1/2

단위의 특별분담금을 약속했음을 보고하였다.

〈표 4-5〉 APT 회원국 특별 분담 내역

| 회원국 | 특별 분담 내역 (현물) |
|-------|--|
| 호주 | 아태지역 통신 발전을 위한 특별 분담금 (US\$117,302) |
| | APT 사무국 표준화 관련 전문가 파견 |
| 방글라데시 | 9차 SATRC 회의 개최 |
| | SATRC 워크샵 (융합환경에서 사업허가) 개최 |
| 중국 | 인력양성 프로그램 (US\$30,000) |
| 피지 | 워크샵 (태평양 지역의 재난 통신 및 네트워크 개발) 개최 |
| 인도 | 인력양성 프로그램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제공) |
| 인도네시아 | 제 4차 APT 무선 포럼 개최 |
| | 워크샵 (통신 무역 규정 및 규제) 개최 |
| 일본 | 제 4차 APT ICT 개발포럼 (ADF) 개최 |
| | 인력양성 프로그램 (US\$900,000) |
| | ICT 연구원 및 엔지니어 교환 프로그램 (US\$500,000) |
| | 농어촌 지역 ICT 시범 프로젝트를 위한 ICT 개발 프로그램 (US\$374,220) |
| | 역내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US\$150,000) |
| | 장기 전문가 파견 |
| 한국 | APG2007-5 개최 |
| | 제 31차 APT MC 개최 |
| | 인력양성 프로그램 제공 (US\$300,000) |
| | 장기 전문가 파견 |
| 말레이시아 | 인력양성 프로그램 (광대역 기술 인식제고) 제공 |
| | 아태지역 통신 정책 규제 포럼 (PRF) 개최 |
| 네팔 | 제27차 APT SG 개최 |
| 몽고 | 표준화 워크샵 개최 |
| 뉴질랜드 | 태평양 지역 통신 ICT 정책 및 규제 미팅 개최 |
| | 워크샵 (태평양 군도를 위한 사이버 법제정 원칙) 개최 |
| 파키스탄 | SATRC 워크샵 (융합환경에서 상호접속) 개최 |
| 태국 | APT 사무국 시설 제공 |
| | 제 12차 ASTAP 포럼 개최 |
| | APT-ITU 워크샵 (NGN 설계) 개최 |
| 마카오 | APT 사업자 포럼 개최 |

일본은 2008년도 APT 재정기반과 관련하여 기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기고서에서 일본은 현재의 타이 바트 절상추세와 관련하여 새로운 운영진들이 인건비를 최저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대안으로 고용지체, 신규채용동결, 예산의 전문가활용, 탄력적인 고용체계의 도입 등 제안하였다. 동 기고서와 같은 맥락에서 호주, 싱가포르 등은 US \$ 외의 통화로 기반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사무국은 재정규칙에 따라 US \$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호주는 추가로 현재의 사무국의 직원 현황에 대한 파악하고 분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논의의 결과 현 APT직원채용구조의 검토와 환율변동에 적의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위한 연구 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할 것을 합의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은 APT의 펠로우쉽 제도와 관련하여 APT행사 참여시 비자발급을 위해 제3국에서 체재하는데 드는 transit cost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무국은 transit cost와 관련된 조항이 있으며, 사안별로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사안들이 fellowship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과 규칙이 부재하는 것이 따른 것이라고 인식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다. 한국은 사무국이 제시한 HRD부문의 Training Program에 있어서 fellowship guideline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비자 관련 이슈에 대한 답변으로 마무리하였다.

제 4 절 제31차 APT 관리위원회의 성과와 정책적 합의

1. 제31차 APT 관리위원회의 성과

제31차 관리위원회는 2007년 8월 APT의 신헌장이 발효되고, 경과규정을 거쳐 2008년 총회에서 경영진의 선거가 있어야하기는 하나, 새로운 경영진이 선출되는 중요한 회의였다. 새로운 사무총장은 당선 연설을 통하여 인력개발(HRD) 활동 강화, APT 지역의 세계적 영향력 강화, 최빈국 및 도서국가의 이해 고려, 정부와 민간의 협력 강화, APT의 효율적·효과적 운영 등 APT의 비전과 임무의 완수를 약속하였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APT의 주요 회원국들은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APT의 내부개혁을 신임 운영진이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중복된 활동내용 등으로 지속적으로 존폐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어온 연구반(Study Group)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이와 연계하여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APT 전체의 또는 각 사업계획들의 작업절차 및 방법에 대한 검토과 개정도 요청하였다. 또한 Fellowship을 포함한 APT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요청되었다.

회원국들은 새로운 사무총장 및 차장에 대한 지지를 밝히는 동시에 APT의 주인으로서 향후 개혁에 대한 참여와 감독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러한 기조는 향후 3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우리나라의 주요 활동 및 성과

APT 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는 APT에 대한 현물기여를 통해 지원을 하고, 국내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동시에 한국 개최라는 이점을 극대화하여, 우리나라의 현안을 회원국 대표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협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우리나라 IT 산업에 대한 홍보기회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아태지역 정보통신정책부서의 국장급 담당자가 우리나라에서 체재하고 경험함으로써 가지게되는 무형의 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가. DOI발표 및 협의

현재 ITU에서 진행중인 정보화 지수 통합논의와 관련하여 DOI지수에 대한 APT 회원국들의 인식 및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The Asia Pacific’s ICT Developm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이라는 제목으로 KADO의 조정문 박사가 keynote speech를 통해 DOI지수에 대해 소개하고, 지수를 활용한 아태지역의 정보화 현황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회원국 실정에 맞는 정보화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APT의 역할 기대를 환기시켰다. 이와 동시에 개별국가와 DOI 관련 협의를 진행하여 2007년 12월 개

최예정인 WTI(World Telecommunications Indicator) 회의와 관련하여 공조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양자간 외교를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몰디브, 태국, 파푸아 뉴기니는 ICT 지수개발에 관심을 보이며, 12월 WTI 회의에 참석할 뜻을 밝혔으며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이란, 호주, 베트남, 부탄, 캄보디아는 WTI 회의 참가가 미정이며, 차후 결정되면 알려주겠다고 하는등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나. IT시연

제31회 APT 관리위원회 회의 기간 중에 APT 회원국, 기업대표 등을 대상으로 국내 우수 IT제품 홍보를 위하여 관리위원회 장소에 전시 부스를 설치하여 IT 시연을 가졌다. 동 시연에는 삼성전자 등 6개 회사 6개 부스가 설치되어 DMB, WiBro, IPTV, WCDMA, 4G 시스템, 인간형로봇 등에 대한 시연이 이루어졌다. 또한 별도로 U-Dream관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한국의 최신 IT 기술현황을 소개하는 등 APT회원국의 국장급 주요 인사들에 대해 IT Korea 보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 기고서 및 의견 반영

한국은 신규 선출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향후 APT 운용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의 구조개편안을 차기 총회(2008, 말레이시아)에 제출할 것과 회원국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임시그룹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호주,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중국, 베트남 등이 지지를 표명하였다. 사무국(신임 사무총장/사무차장)이 초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의견수렴기간 동안 회원국의 추가 제안을 수용하고, 이를 반영한 내용을 차기 총회에 제안하기로 함

ASTAP 권고 승인과 관련하여 한국은 동 권고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한 한국 기고서를 권고의 부속서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중국은 동 권고의 승인 자체를 반대하였다. 한국의 기고서(21.8)에 기반한 동 권고의 추가 수정이 ASTAP 회의에서 필요함을 주석으로 처리하고 승인키로 결정

RA 준비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APG 회의에서 RA 문제를 다루는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한국의 기고서를 이견 없이 승인하였으며, 2008년 APT 정책 및 규제포럼

(PRF)에서 ITU의 제4차 WTPF 의제에 대한 지역 사전협의를 포함하여 논의하자는 한국의 제안을 채택하였다.

제5장 평가 및 전망

최근 수십년 내 최고조에 이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영향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ITU의 역할은 기존의 전기·전파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다른 국제기구들이 관련논의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ITU의 역할 변화 필요성에 대해 여러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ITU의 활성화 및 위상 강화를 위한 ITU 운영의 신뢰성,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등 내부 개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6년 전권회의에서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을 포함한 운영진이 선출되었으며, 향후 8년간의 ITU운영이 새로운 비전하에 수행될 예정에 있다. 운영진의 면면을 보아 특히 개발부문의 활동을 포함하여 ITU 활동 확대 등 개도국의 수요가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임원 운영진 국가로는 진입하지 못하였으나 5선 연임 이사국으로 IT 강국위상에 걸맞는 참여 및 기여가 요청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ITU에 대한 감독 및 자문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ITU 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ITU 활동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TU는 각 부문이 연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전파부문 및 표준화 부문의 경우, ITU의 체제에 맞추어 대응체제를 갖추고 정보통신부 본부의 해당 팀이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ITU 회원국 및 이사국으로서의 권한 및 책무 수행을 위한 전권회의와 이사회는 정보통신협력본부가 총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ITU활동이 협력외교(정책포함)와 기술외교의 축으로 나뉘며, 기술외교에 해당하는 R 및 T 부문의 대응체제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문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및 외교전략적인 면에서 충분치 않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MBG 및 이사회 작업반 등으로 관련 활동이 상시화되고 있는 이사회 활동 측면에서는 ITU의 5선 이사국 및 핵심회원국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

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된다. -D부문의 경우, WSIS 이행, 신임 운영진의 취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며, 이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각 부문별 활동의 전문성 및 독립성은 존중, 유지되어야 하나 협력외교의 전략적 수행 및 효과제고를 위한 국익제고라는 측면에서 ITU 활동 프레임 워크의 수립을 추진해나가며, 기존의 ITU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ITU 대응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상위레벨의 ITU 협력 및 외교를 위한 시스템 마련하는 것이 향후 우리의 장기적 활동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협력본부가 IT 협력외교의 총괄로서 전략을 수립하고, 본부 내의 부문별 총괄들과 조정 및 조율하는 총괄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국제회의 유치, 의장직 진출, 핵심의제의 승인 대응 등에 있어서 총괄 본부가 결정권을 같은 위계로 양자간외교 및 외교통상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의 국제협력간의 전략적 연계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하는 것이 그 성과가 될 것이다. 부문별 대응체제의 강화는 기존의 전파 및 표준화 부문과 유사하게 ITU-D 부문 및 총괄(전권회의 및 이사회활동)의 대응체계를 총괄 본부 위계에 따라 강화시키고, ITU 연구위원회의 ToR을 표준화부문에 국한하지 말고 확대하여 전 부문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문별 본부 총괄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주요이슈에 대한 인지제고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위원회내에 부문간 정보교류를 강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일 것이다.

더불어 기술부문 전문가들은 확보되고, 적절히 활용되고 있으나, 개발부문을 포함한 정책 부문 및 기타 법률 회계부문의 전문가활용은 미약하거나, 관련 제도가 부재하다는 점, IT 신기술의 발전 및 융합의 진전으로 신규이슈 및 애매한 부분(Grey Area)이 발생하여 현재의 체제로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ITU 부문간 및 타 국제기구와 핵심이슈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처의 미흡했다는 평가에 전문 인력의 육성이 대안이 될 것이다. ITU 및 APT 등 국제기구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전문가를 고용, 국제기구의 법률문서, 회계, 재정, 감사 등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자문과 검증을 하도록 하고, 국제기

구 활동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국제기구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관련 이슈 및 의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토록 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 현재의 전문가 지원제도는 IT Fellowship제도로 확대하여 국제기구 참여 전문가의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IT 국제기구 업무를 지원하고, 사전 학습할 수 있는 인턴제 도입하여 미래 전문가를 키울 기반을 마련하여야겠다. IT 국제기구 업무종사자 및 예비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기구 관련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일 역시 필요할 것이다. 전문인력 양성에는 ITU 및 APT를 포함, 주요 국제기구의 의장 및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선출직 인사 진출 필요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인사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장기전략 수립 및 추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기술적 전문성을 중심으로 기존 국내 전문가가 진출하여 왔다면, 향후에는 리더십 측면으로 초점을 맞추어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국제기구 전반의 업무를 장악할 수 있는 핵심 인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요 국제기구 활동이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외 출장관련 인력, 예산 부족으로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회의 이외의 분야에 대한 참여가 미흡하여 ITU 네트워크 구축 및 동향 파악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있다. 과거에는 KT 제네바 사무소를 통해 유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철수상태이며, 제네바 대표부 주재관의 경우 업무가 과다하고, 파견직을 포함한 ITU 한국인 직원은 직무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네바에 상주하면서 ITU 사무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ITU의 전 부문 활동에 참여하여 회의결과를 국내에 보급하기 위해, 기존의 협력센터나 IT Park의 제도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거점기관을 설치하여 인력을 파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난 2006년 5선 연임으로 20년간 이사국 지위에 오른 한국은 향후 ITU 선출직 및 주요 의장직 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ITU의 환경변화 및 ITU를 통한 우리나라 국익제고를 위해 장기적인 맥락에서 참여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Final Acts of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Antalya, 2006), ITU

The ITU Mission: Bringing the Benefits of ICT to all the world's inhabitants, ITU

서보현 · 정인억 외, 『국제기구의 주요 정보통신 정책이슈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연구』 연구보고 02-06, KISDI, 2002

김철완 · 김태은 · 안상은 · 조정문, 『주요 국제기구 논의 동향 파악 및 대응전략 수립연구』 연구보고 05-54, KISDI, 2005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요 국제기구(ITU, WSIS, APT) 참가 결과보고서』, 2005. 12.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년 제17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참가 보고서』, 2006. 12.

www.itu.org

www.aptsec.org

부 록

1 이사회 문서 목록

□ 본회의

- 일반 정책, 전략 및 계획 수립

| 구분 | 주요 내용 |
|-----|--|
| 1.1 | 정보사회정상회담 (W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SIS 결과의 이해에 있어서의 ITU의 역할 -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와 포괄적 정보사회의 구축 - WSIS와 관련된 ITU활동에 관한 당사자들의 참여에 대한 연구 |
| 1.2 | 세계 통신 및 정보사회의 날 |
| 1.3 |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프로토콜기반 네트워크 - 인터넷과 도메인명 및 주소를 포함하는 인터넷자원 관리에 대한 국제 공공 정책적 이슈와 관련한 ITU의 역할 - 국제 다언어 도메인명의 관리에 있어서 회원국 정부의 역할 |
| 1.4 | 이사회 작업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작업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기술 이용의 신뢰 및 보안 관련 용어의 정의에 대한 연구 • ITU헌장 및 협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검토 • ITU의 기능 및 관리에 대한 연구 - 이사회 운영·예산 그룹(MB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G 보고 • 이사회 결의 1243의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
| 1.5 | 읍저버의 ITU 총회 및 회의 참석 |
| 1.6 | ITU-T 권고의 무료 온라인 접속 시범사업의 결과 |

○ ITU 행사

| 구분 | 주요 내용 |
|-----|--------------------------------|
| 2.1 | 향후 ITU행사 |
| 2.2 | 2008 이사회의 일시와 기간 |
| 2.3 | 이사회 회기 및 전권 위원회의 일정수립 |
| 2.4 | WTSA-08의 의제, 일시 및 장소 |
| 2.5 | ITU 총회 및 회의를 위한 개최국 협정 모델의 유용성 |
| 2.6 | WTPF-09의 일시 및 장소 |

○ 이사회 검토를 위한 보고서

| 구분 | 주요 내용 |
|-----|------------------------------|
| 3.1 | ITU의 활동에 대한 연차보고서(2006~2007) |
| 3.2 | ITU-R 운영계획 (2007, 2008~2011) |
| | ITU-T 운영계획 (2007, 2008~2011) |
| | ITU-D 운영계획 (2007, 2008~2011) |
| | 사무총국 운영계획 (2007, 2008~2011) |
| 3.3 | 세계 및 지역 정보통신기술 전시회 및 포럼 |
| 3.4 | 언어의 사용 |
| 3.5 | 지역사무소의 강화 |
| 3.6 | 관리위원회 보고 |

○ 기타

| 구분 | 주요 내용 |
|-----|------------------|
| 4.1 | ○ 부문회원 및 준회원의 참여 |
| | ○ 연체금 면제 요청 |
| 4.2 | 유효하지 않은 이사회의 결정 |

□ 관리 위원회

| 구분 | 주요 내용 |
|----|-------------------------------------|
| 1 | 2008~2009 2개년 예산안 |
| 2 | 사무총국 및 각 부문의 국내부조직 개편 |
| 3 | 2006 재정운용보고 |
| 4 | 연체 및 특별 연체 계좌 |
| 5 | 2006 결산에 대한 외부감사보고 |
| 6 | 외부감사보고서의 후속조치 |
| 7 | ITU TELECOM America 2005 결산 |
| 8 | 수입 및 지출의 연간검토 |
| 9 | 재정규칙 및 관련 재정관련 이슈에 대한 이사회 그룹 보고 |
| 10 | 부원회원 및 준회원의 ITU 비용 부담 후속조치 및 관리의 개선 |
| 11 | 위성망 등록 절차의 비용회수 |
| 12 | 결과기반 예산수립(RRB)의 이행 |
| 13 | UN공동체제하에서의 복무조건의 변경 |
| 14 | 직원연금위원회 위원 |
| 15 | 사무부총장의 임무 및 기능 |
| 16 | ITU의 프로젝트 수행기능의 강화 |
| 17 | HRD에 대한 삼자그룹(Tripartite Group) 보고서 |
| 18 |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
| 19 | 자원퇴직제 실시 |

2 이사회 기고문 의제별 대응 논리

1. Management and Budget Group

- MBG의 이사회 자문그룹으로서의 성격 명확화
 - MBG는 현재 결의안 초안에 명시된 것처럼 ITU 선출직 인사들에게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그룹이 아니라 이사회 자문그룹으로서 활동해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
 - 기존에 이사회 산하 작업반으로서 활동하던 NCOG을 투명성, 개방성을 높여 기능을 보완·확충하고자 설립하는 MBG는 이사회에 대한 자문기능을 해야함
 - MBG는 참여를 원하는 이사회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여 투명성, 개방성을 높이도록 해야함
 -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제네바 상주 대표부가 참석하는 회의 형식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 이사회 자문그룹이어야하는 MBG가 연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소규모 전문가 그룹을 산하에 두는 등 형식화하게 되면, 이사회의 기능 및 권한을 침범할 우려가 있음
- MBG 내 소규모 전문가 그룹 설립 반대
 - 소규모 전문가 그룹의 효율성을 제기하는 의견에 대해서,
 - 이사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MBG 내에 또다른 작업반을 설립하는 형식은 자문 의견을 두 층위에서 제시한다는 것이므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을 제시할 것임

2. 자발적 인적 기여 확대

- ITU 내 인적 자원 수요의 지속적 증가 상황 지적
 - 인건비 절감을 위해 회원국의 자발적 인적기여 확대 등 방안 강구 요청
 - － ITU가 비용 절감을 위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
 - － ITU 활동 증가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추가인건비 부담이 없이 인력 투입 증가가 필요한 상황임을 지적함
 - － 이에 대한 이사국 전반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인적 기여를 포함한 자발적 물질 기여를 제안하여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취지임을 밝힘
- 일부 국가만의 인적 기여로 인해 공정성 저해 반론 대응
 - 개도국 등에서 인적 기여를 포함한 자발적 물질 기여가 한정된 회원국만이 가능한 대안으로 ITU의 공정성에 위해가 갈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면,
 - － IT 발전과 함께 증가되고 있는 ITU의 인력 수요와 이에 대비, 인건비 증가는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제안된 의견이며,
 - － 우리나라로서는 이외의 인적 자원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함께 기꺼이 검토할 의향이 있음을 강조할 것임
 - － 회원국 자발적 인적 기여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는 Associate Professionals 제도를 예로 들자면, 실무급 인력 제공으로서 ITU가 자체 선정 기준으로 선발하는 등 전체 공정성에 위해가 올 우려가 없으며,
 - － ITU 직원 사기에 대해서는 실제 고강도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실질 효과가 있어 오히려 사기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됨을 강조할 것임
 - － 또한 자발적 인적 기여의 대상이 (1) 정보격차의 해소, (2) 표준화 격차의 해소 등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ITU의 인력 이외의 추가되는 인력에 의해 개도국의 수혜가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3 이사회 기고문 본문

Your Excellency,

On behalf of Republic of Korea,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to you and all the ITU colleagues for making every effort to better manage activities and resources that ITU has undertaken.

It is our honor to suggest a few proposals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Council and the ITU in general.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public of Korea

1. Composition and Work Method of MBG(C07/46)

We would also extend our appreciation to Mr. Mendes, provisional Chairman of MBG, for having prepared the MBG Meetings and generating fruitful outputs to the Council.

Republic of Korea supports the creation and activities of MBG in that the Council members would become ab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works and management of ITU at all times and thus, the working transparency be promoted. Considering the workload and time consumption for discussion of the main issues during the Council meetings, it would clearly enhance the work efficiency of the Council.

We would like to echo the report of the MBG to the Council that it in no way

should be construed as a substitute for Council by duplicating the work or infringing the authority of Council. Taking account of the supporting role of MBG to the Council, the MBG should be able to be informed of concerned issues and have consultations when necessary. Republic of Korea is of the opinion that the working method of the MBG should be flexible enough to implement tasks mentioned above. Therefore, the MBG should be able to communicate to the fullest extent through various measures possible, e.g. holding meetings where the permanent missions in Geneva could participate, sharing information and consulting by electronic means.

Especially, Republic of Korea is concerned that the establishment of small expert group(s) would limit continuous effort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openness of the Council Working Groups like the MBG. Republic of Korea proposes that the need of small expert group(s) be thoroughly reviewed. In case that the groups be established, they should be open to every Council member who wishes to participate in. It is our belief that the general principle of transparency be respected.

Last but not the least, taking advantage of the Council 2007, we wish there would be productive discussions on the issue of the MBG to continue strengthening and improving the management of the Council and Union.

2. Voluntary Contribution in Kind from Members

Considering the current financial status of the ITU that the overall contributions from members are gradually decreasing and the future demands for ITU activities are expected to increase, it is a common concern that the ITU should make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the work efficiency and meet its financial soundness.

Republic of Korea also supports efforts of ITU Secretary-General and the Secretariat in this regard and is of the view that the ITU should step up its cost-cut efforts including actions mentioned in the Options for reducing expenditure Annex 2 to Decision

5 (Antalya, 2006) and other various measures to recover the expenditure, retrieve arrears and create the income in new kinds.

It is our belief that efforts for the cost reductions should not lower the quality of ITU activities and hinder achievement of ITU principal goals. It has been noted that within the ITU, diverse attempts have been made in order to cut down on personnel expenses, e.g. voluntary retirement, employment lag, relocation of human resources, even as it is the fixed cost with the least flexibility. Korea suggests, in this respect, that voluntary contribution in kind including human resources by Member States could be considered by the Union to respond this situation. Contribution of human resources based on Member States' voluntarism would be of great help to share the high work load of ITU staffs in general and continue to produce outstanding performance in spite of reduction of personnel.

3. ITU TELECOM

It is our understanding that a significant part of any surplus from ITU TELECOM activities should be used as extra-budgetary income, which should be used for specific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projects, primarily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pursuant to Resolution 11(Antalya, 2006). To facilitate a sound financial streaming, we suggest that SG prepare a report on future plans for the cost-effective management of ITU TELECOM, which includes the strategy to maximize the number of exhibitors and to reduce the excessive operating expenditure, based on the sound measurement such as bench-marking the successful private-sector exhibitions.

ITU TELECOM events and activities should be on open and transparent process. Republic of Korea is of the opinion that the full decision-making process in relevance to the future ITU TELECOM events should be reported to the ITU Council. For the venues of ITU TELECOM events to be selected, the selection criteria and the fixed time

framework, including the deadline for applications, the date of site inspection, the date to be held, the date of presentation on competition and the final date of venue selection, should be reported to the ITU Council. After the venues of ITU TELECOM events are selected, the rationale of the decision should be reported to the forthcoming ITU Council. It is of no doubt that the information on the selection criteria should be explicit and provided to the full extent. Making public these proceedings would help ITU TELECOM to attract more attention of expected exhibitors and the press, and reflect their opinions for the successful results. Republic of Korea requests SG to supplement the annual report of ITU TELECOM activities, reflecting the suggestions above, pursuant to Instructions to the Secretary-General No. 5, Resolution 11, Antalya, 2006

4 APT 관리위원회 의제

| | 제 목 |
|------|--|
| 2 | 의제(안) |
| 2.1 | 프로그램(안) |
| 3 | 회원국, 국제 및 지역 기구 대표 연설 |
| 4 | 200년 사무총장 보고 |
| 5 | APT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
| 5.1 | CTO와의 MOU |
| 6 | 아·태 통신 및 ICT 개발 포럼(ADF) 보고 |
| 7 | 아·태 통신 정책 및 규제 포럼(PRF) 보고 |
| 8 | APT 연구반 보고 |
| 9 | ASTAP보고 |
| 10 | APG 활동 보고 |
| 11 | AWF 보고 |
| 12 | WTSA-2008 보고 |
| 13 | 권고안 검토 |
| 14 | 회원국, 준회원 및 협찬회원의 분담금 연체 보고 |
| 14.1 | 나우루의 연체 |
| 15 | APT의 협찬회원 증대 연구그룹의 권고 검토 |
| 16.1 | 2007 활동 프로그램의 검토 |
| 16.2 | 2008 활동 프로그램 |
| 17.1 | 2006의 비용 및 감사 보고 |
| 17.2 | 2007 수정 예산 |
| 17.3 | 2008 추정예산 |
| 17.4 | 외부감사의 임명 |
| 17.5 | 기금의 투자 |
| 18.1 | 회원국, 준회원, 협찬회원 및 기타 기구의 특별분담금 |
| 18.2 | 2007 특별 분담금 보고 |
| 19 | 2009~2011의 APT 전략 문서안의 준비 |
| 20 | 차기 사무총장 및 부사무총장의 선출 |
| 20.1 | 사무총장 및 부사무총장의 입후보자 |
| 21 | APT 회원, 준회원 및 사무총장의 제안들 |
| 21.1 | 아·태지역의 표준화 격차 해소를 위한 APT-ESCAP-ITU,포럼(안) |
| 21.2 | 아·태 지역의 임시 및 재해 통신장비 운영에 관한 APT-ITU교육(안) |
| 21.3 | 태평양지역의 통신/ICT 개발을 위한 APT-ITU-PITA 워크샵(안) |
| 22 | 11차 총회 및 32차 관리이사회의 장소 및 일시 |

● 저 자 소 개 ●

김 철 완

- 성균관대학교 영문학과
- The Wharton School,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영학 박사
- Georgia Tech 경영대학 교수 역임
- 現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협력연구실장

김 태 은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 서울대학교 외교학 석사
- 現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안 상 은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 서울대학교 외교학 석사
- 現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수탁연구 07-42

'06년 ITU전권회의 정책적 함의와 전략적인 국제기구 활동 강화방안 연구

2007년 12월 일 인쇄

2007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석 호 익

발행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1

TEL: 570-4114 FAX: 579-4695~6

인쇄인성문화
